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교원정책중점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Teacher Policy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교원정책통찰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Teacher Policy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차 례

Ⅰ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 1

1.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 3
2.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 9
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벌 ····· 11

Ⅱ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9

1.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 ····· 21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22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26

Ⅲ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 / 37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강화 ····· 39
2. 학교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40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 41
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42
5. 안전한 학교환경 및 건전한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 43

Ⅳ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 47

1. 침해 사안 처리의 기본원칙 및 침해 유형 ····· 49
2.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 53
3.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 81
4. 그 밖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 112

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 / 119

1.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121
2. 피해교원 지원 ····· 123

부 록 / 133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 135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 164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제 ····· 168
4.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실제 ····· 178
5. 고충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 198
6. 소청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 201

표 차례

〈표 Ⅰ-1〉 교육자로서의 권리 보장 내용 및 근거 규정 ····· 3
〈표 Ⅰ-2〉 전문가로서의 권리 보장 내용 및 근거 규정 ····· 4
〈표 Ⅰ-3〉 인간으로의 권리 보장 내용 및 근거 규정 ····· 4
〈표 Ⅰ-4〉 법제명 변경 및 법령 제·개정 ····· 6
〈표 Ⅰ-5〉 교육활동 침해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효과 ····· 13
〈표 Ⅰ-6〉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 17
〈표 Ⅱ-1〉 교육활동 침해 대응 ····· 23
〈표 Ⅳ-1〉 침해 정도에 따른 대응 방법 ····· 50
〈표 Ⅳ-2〉 관계자별 대응 방법 ····· 51
〈부표 -1〉 예방교육 진행 방법 ····· 168
〈부표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비교 ····· 171
〈부표 -3〉 예방교육 강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예시 ····· 177
〈부표 -4〉 학생으로서 해야 할 행동 ····· 193
〈부표 -5〉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194
〈부표 -6〉 인권·친화적·회복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 195
〈부표 -7〉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 ····· 196
〈부표 -8〉 학생자치법정 월별 운영 계획 ····· 197
〈부표 -9〉 학생자치법정 긍정적 지도의 유형 ····· 197

그림 차례

[그림 Ⅱ-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 28
[그림 Ⅱ-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 30
[그림 Ⅳ-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 49
[그림 Ⅳ-2] 학생의 폭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절차 ····· 57
[그림 Ⅳ-3] 학생의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절차 ····· 62
[그림 Ⅳ-4] 학생의 수업진행 방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절차 ····· 67
[그림 Ⅳ-5] 명예훼손 및 사이버 매체 폭력 사건 처리 절차 ····· 72
[그림 Ⅳ-6]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 사건 처리 절차 ····· 78
[그림 Ⅳ-7] 학부모에 의한 폭언 사건 처리 절차 ····· 87
[그림 Ⅳ-8] 학부모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절차 ····· 89
[그림 Ⅳ-9]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절차 ····· 95
[그림 Ⅳ-10]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절차 ····· 96
[그림 Ⅳ-11] 학교안전공제회 사건 처리 절차 ····· 102
[그림 Ⅳ-12]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방법 ····· 103
[그림 Ⅳ-13]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청구 방법 ····· 104
[그림 Ⅳ-14] 부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 및 민원 사건 처리 절차 ····· 110
[그림 Ⅳ-15] 성희롱 고충 상담 처리 절차 ····· 115
[그림 Ⅴ-1] 회복 단계별 피해교원이 겪는 어려움 ····· 125
[그림 Ⅴ-2] 회복 단계별 지원 내용 ····· 128
[그림 Ⅴ-3] 회복 단계의 유의 사항 ····· 131
[부그림 -1] 생활협약 제정 절차 ····· 178
[부그림 -2] 생활협약 운영 절차 ····· 192
[부그림 -3] 고충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 198
[부그림 -4] 소청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 201

본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Ⅰ.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1.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2.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벌

Ⅰ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1.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 교원의 교육권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 및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
-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 교육권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때 실현 가능

가. 교원의 권리 보장

교육자로서의 권리

-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 내용·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 교사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교원의 교육할 권리 보장
- 내용 및 근거

〈표 Ⅰ-1〉 교육자로서의 권리 보장 내용 및 근거 규정

보장 내용	근거 규정
•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됨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ILO/UNESCO) 제61조 및 67조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는 법률로 보장함	•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14조
•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약받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 신분·지위 보장, 쟁송 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원단체·노동조합 활동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보장되는 교원의 지위·신분적 권리 보장
- 내용 및 근거

〈표 Ⅰ-2〉 전문가로서의 권리 보장 내용 및 근거 규정

보장 내용	근거 규정
• 교원의 지위와 신분은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으며, 법률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강임·휴직·면직되지 않음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교원의 인사·조직·처우 및 기타 직무조건에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교원은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학교에서 체포되지 않음	• 「교육공무원법」 제48조
• 교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음	•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사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교원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 보장 내용 및 법률 근거

〈표 Ⅰ-3〉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장 내용 및 근거 규정

보장 내용	근거 규정
• 교원은 시민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음	• 「헌법」 제11조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ILO/UNESCO) 제80조
•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특별히 보호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 교원에 대한 부당한 민원·진정 등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부분 참고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주요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유

-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
- 기존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제명 변경(2016년 2월)

주요 내용

-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무 규정
-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우대
- 학교안전사고 책임에서 교원을 보호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 도모
- 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 징계 및 인사 상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존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법제명 변경(2016년 8월)

주요 내용

- 교육활동 보호 기관·조직 운영, 연수 및 홍보, 피해교원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에 대한 과도한 행사 참여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제한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리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법제명 변경 및 법령 제·개정

〈표 Ⅰ-4〉 법제명 변경 및 법령 제·개정

구법	신법	시행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년 2월 시행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년 8월 시행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2017년 4월 시행

✔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한 법제명으로 변경
- 법제명 및 입법 목적에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여 명확한 정책적 지향 천명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으로 변경하여 법률 체계 정비

✔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시행 의무 강화
-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부과
- 시·도교육청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운영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상급기관 보고 의무화
- 교육활동 침해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기준 마련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구체화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정

2) 주요 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운영)
  제6조의2(시 · 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요 내용

-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역할을 강화함.
-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자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가해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 권고 등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사건 처리 업무를 주관함
-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 단위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건의 조사 및 분쟁 조정, 피해교원 치유 및 복귀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함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지역인사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및 제2조(소청심사청구)

주요 내용

-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공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국·공·사립의 교원은 누구나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제 교원이나 학교의 일반 행정 직원은 교원소청심사의 청구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신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함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주요 내용

-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음
-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해당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청구인이 될 수 없음

학교장 통고 제도

설치 근거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주요 내용

-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접수시킬 수 있음
-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에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범죄 경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므로,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심리치료를 우선하는 등 재발 방지와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초점을 둠
- 대상자는 촉법소년(10~14세 미만)이나 범죄소년(14~19세 미만) 또는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10~19세 미만)임

2.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가. 포괄적 정의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현상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 관리자의 지도·감독권 남용
-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 부당한 신분·인사 상 조치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나. 법률적 정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처벌

가. 처벌 원칙

무관용원칙 적용

-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범죄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률로 보호되며, 그 침해 역시 법률에 의해 금지된 위법 행위에 해당

- 관용적인 태도 지양
  -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 학생·학부모 등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무관용원칙을 천명

- 보고 및 신고 의무화
  -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상급기관 의무 보고
  - 심각한 사안의 경우, 특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및 적극적인 형사적 고소·고발 대응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폭행죄 또는 협박죄 외에 「형법」의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 등)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는 사례 증가
  - 사립학교의 경우도 유사한 내용의 업무방해죄(제314조) 적용 가능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가중처벌 효과

- 단순한 폭행죄 또는 협박죄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2배 정도 처벌 형량 증가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 가능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능
-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인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 국·공립학교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동일한 효과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효과

〈표 Ⅰ-5〉 교육활동 침해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효과

「형법」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는 경우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경우
-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 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 처벌 불가능	-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음 ⇨ 고소·고발에 소극적인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가능

나. 처벌 규정

1) 「형법」에 의한 처벌

-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폭행죄
- 제283조(협박)에 해당하는 협박죄
- 제257조(상해)에 해당하는 상해죄
- 제307조(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
-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모욕죄
-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369조(특수손괴)에 해당하는 재물손괴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4조(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
-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처벌

- 제11조에 해당하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제12조에 해당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제13조에 해당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제14조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풍속에 관한 죄 등 적용(「형법」 제22장)
- 강간과 추행의 죄 등 적용(「형법」 제32장)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유통죄
- 제70조(벌칙)에 해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처벌

✔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조치

-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참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발의안 제20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16.11.11.), 교문위 계류 중

✔ 특별교육의 내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 학생 징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단, 퇴학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 결정에 의해 학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 가능함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강제전학'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판결(2016.10.31. 대법원)

※ 〈참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발의안 제18조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17.2.9.), 교문위 계류 중

5) 「소년법」에 의한 처벌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반복성 및 죄질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통고를 통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 학교장 통고제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표 Ⅰ-6〉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호	감호 처분	기 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감호 위탁(6월+6월)
2	수강명령	100시간,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1년)+상담·선도교육(3월)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2년+1년)+상담·선도교육(3월)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감호 위탁(6월+6월)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Ⅱ.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Ⅱ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①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구성 목적

-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심의
-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관리 및 분쟁 심의
-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처리되지 못한 분쟁 조정

위원 선출

-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7.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주요 역할

-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 등 보호 조치
-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 교육활동 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의 심의·조정

교육활동 침해 대응

〈표 Ⅱ-1〉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도교육청	⇨	– 법률지원단과 공조 –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공조

사안 접수 후 대응		세부 사항
고등학교 발생 사안 ⇩ (시·도교육청 교권담당)	• 교육청 교권업무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사건 개요 파악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상황 점검 및 지원 방안 협의	• 경미하고 단순 사안은 학교 자체 처리하도록 안내 - 교원과 학생·학부모와 분쟁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 유도 • 중대한 사안(신체 폭행, 흉기 소지 협박 및 위협, 성폭행 등)은 전담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학교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 피해교원의 정상적 업무 복귀 지원 - 병가·휴직 및 긴급 전보 조치 등 행정적 지원 - 심리 치료·상담 서비스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 서비스 지원 •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분쟁 조정 및 대응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징계 및 특별교육·심리치료 권고 - 학부모·동료교원 및 외부단체의 교육활동 침해 시 형사 고발 및 소송 지원
초·중학교 발생 사안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안 파악 및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지원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근거 규정 현황

(조례) 광주, (규칙)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규칙(예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회의소집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특정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정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교육감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분쟁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권보호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구성 목적
- 학교 자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판단 기준 마련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대책 수립
-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교원 보호 및 사건 조사
- 가해학생·학부모 및 피해교원 면담 등 분쟁의 조정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권고

법적 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자문기구
-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선도위원회 심의 회부 및 학교장 결정 권고

위원 선출
-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 선출) 학교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만,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유의
- (선출 방법)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 등에서 선출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 등에서 선출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

회의 소집
-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기타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1. 긴급 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2.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 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3. 조사 및 중재
   - 사고 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 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4. 심의 및 통보
   - 사건 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 회부 및 학교장 결정 요청
5.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당사자 불복 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6.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1. 긴급 조치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2.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담임·행정 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3. 조사 및 중재
   - 사고 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 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4. 고소·고발 및 상급기관 지원 요청
   -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지원 요청
   -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고발
5.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 (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회의 진행 과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진행 절차를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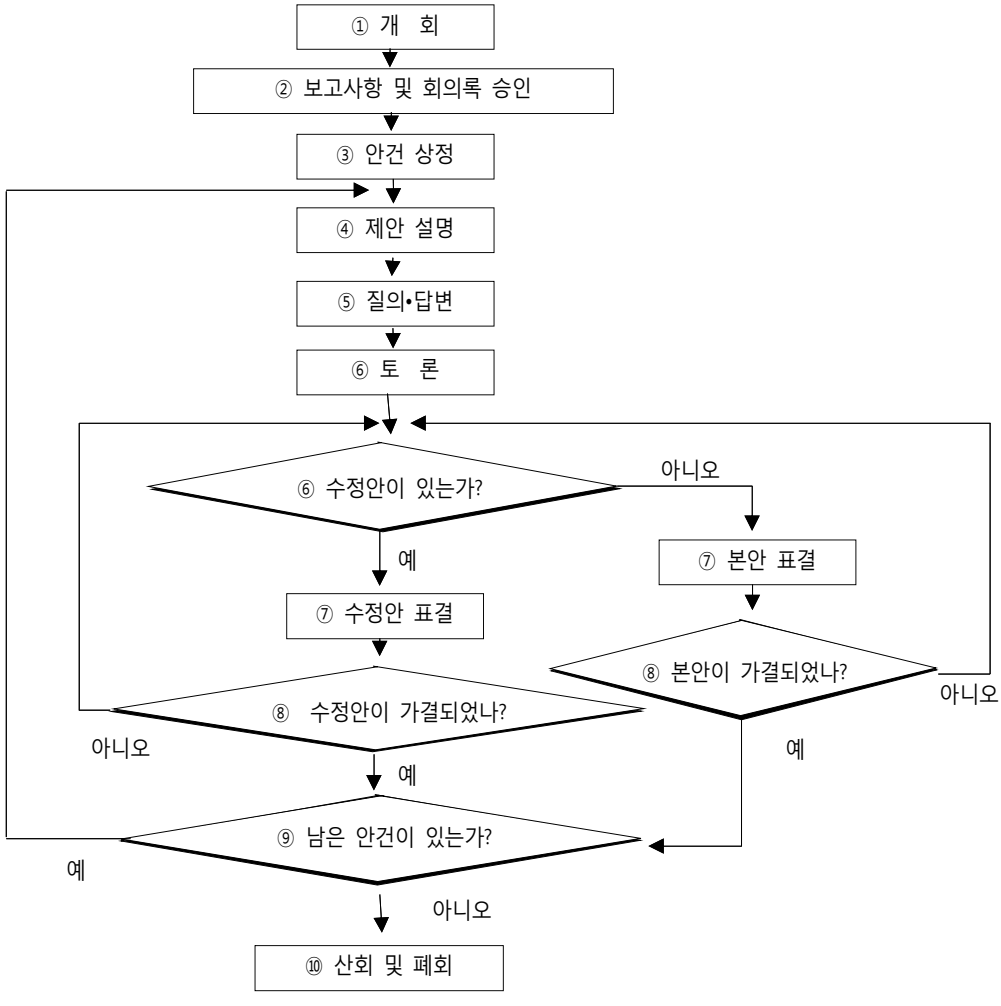

[그림 Ⅱ-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

가. 소집의 요건

-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나. 회의록 작성

-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다.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예: 사안 조사서, 관련 교원 확인서, 관련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 등)

서류 전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게 될 사안보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시작 전에 위원과 위원장에 전달하도록 한다. 이는 위원과 위원장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보안 문제로 당일 배부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라. 장소 준비

- 피해·가해측 대기 장소 준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 책임교사가 사전에 가해측과 피해측이 있을 장소를 따로 지정
- 회의 좌석 배치 준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시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회의 좌석 배치도 미리 준비

마.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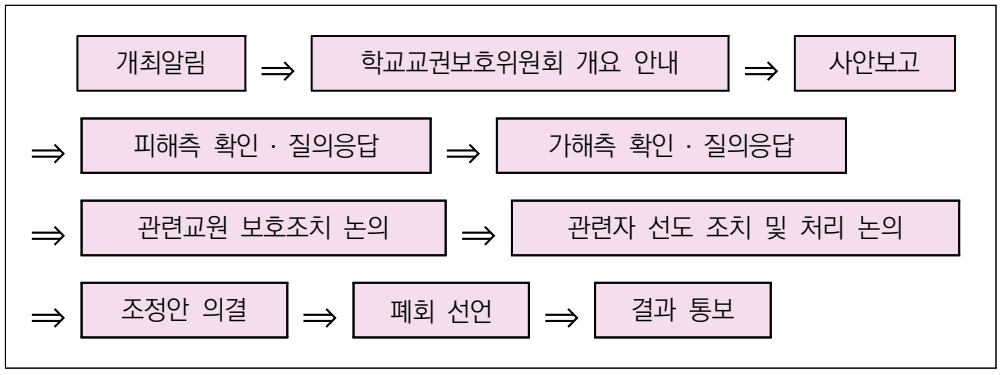

[그림 Ⅱ-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1) 개최 알림 : 위원장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알린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요안내 : 업무담당교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목적
- 진행절차
- 주의사항 전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
  -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림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됨을 알림
  - 위원들의 제척 사유 여부를 확인
  - 회의 참석자 전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림

▸ 참석자 소개

관련자(가해)측과 관련교원(피해)측의 확인 시 대면의 문제
피해·가해측이 확인 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피해측은 확인 후 퇴실하고, 대기하고 있던 가해 측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진행해야 피해·가해측이 마찰 없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과정상 녹취가 필요한 경우 녹취됨을 공지

3) 사안 보고 : 담당교사가 사안 조사 결과 보고

4) 관련교원(피해) 확인 (사안확인, 요구사항) 및 질의 응답

▸ 사안을 확인하고 피해 측의 입장에서 요구를 말하도록 함

▸ 위원회에서 피해 측에 질문하고 피해 측에서 답변함

5) 관련자(가해) 확인 (사안확인, 가해 측 입장) 및 질의응답

▸ 사안을 확인하고 가해 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함

▸ 위원회에서 가해 측에 질문하고 가해 측에서 답변함

※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참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6) 관련교원(피해) 보호조치, 관련자(가해) 선도·교육고발 등 조치 논의 및 결정

▸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관련자(가해) 선도·교육고발 등 조치를 논의하여 결정함

7) 피해·가해 측에 결과 통보 :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또는 구두)으로 결과 통보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부분 참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규칙(예시)

○○○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교감
2.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교사
3.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 위원
4. 경찰공무원 또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5.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가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OO시·도 학교운영 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OO시·도 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1년 이상 2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Ⅲ.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강화
2. 학교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5. 안전한 학교환경 및 건전한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Ⅲ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

단위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자 지정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정례적 실시 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학교규칙으로 교육활동 보호 규정 마련
- 자율적인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 보안 시스템 확충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학생·학부모·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의·자문기구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가능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제정

-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규정

✔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에 관한 학교규칙 마련
-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 및 처리 기준 마련

✔ 정례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 학기초 1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예방 교육 실시

✔ 침해 사건 사안의 조사·처리 업무 주관
- 피해교사 즉시 격리 보호 및 사건 조사·보고
- 선도위원회로부터 이관된 요청 사항 심의
- 학교장에게 심의 결과 이행 권고

✔ 학교 내 교권보호책임관(교감 등) 선임
- 학교장 등은 교권보호책임관(교감 등)을 선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조사·보고 및 피해교원 지원 업무 담당

2. 학교 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학내 교권보호책임관(교감 등) 지정
-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 피해교원 보호, 사건 조사·보고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 학년별·층별·동별 책임관 등 복수 지정도 가능하며, 그 경우 대표 책임관 지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위원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적합한 담당자 지정에 유의

✔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의 담당 업무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업무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즉시 격리 및 대응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면담 및 중재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보고 등 관련 행정 업무 수행
- 학교장에게 후속조치와 관련된 조언 및 권고
- 행정기관 및 언론 대응 조언 및 지원
- 피해교원 치유·복귀 과정 조력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정례화
- 학기초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별도로 교육 실시
- 학교 여건 및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 가능
- 학부모 교육은 상담 및 수업개방 등 기존의 학교 참여활동과 연계 가능

✔ 학생 교육의 경우 학급 단위 실시 원칙
-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실시 가능

✔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순회 강사단 활용 가능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전문 강사진 주도로 학년별·학급별로 동시 진행 가능

✔ 예방교육 포함 내용
- 학생 대상 교육
  :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 및 유형,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결과 징계 및 처벌 유형, 올바른 학교 문화 조성 방법 등 포함

- 학부모 대상 교육
  :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 및 유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유형, 자녀의 교육활동 침해 징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교직원 대상 교육
  :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포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제 부분 참고

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 신장
-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상호존중의 대화법을 일상에서 실천
- 교육활동 침해 징후 파악 및 상담 활동 강화

✔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정착 노력
- 학칙으로 정해 놓은 훈육·훈계 방법에 따른 학생 지도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 학부모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동료 교원의 자율성 및 권한에 대한 존중

✔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 역량 신장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을 통한 침해 시 대응 방법 숙지
-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별 대응 매뉴얼 구축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 교육활동 침해는 용인의 대상이 아니라 형법 등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임을 강조
- 가해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경찰 신고 및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

교원을 위한 상시적인 상담 및 법률 서비스 안내
- 피해교원에 대한 수업·담임·행정 업무에서의 일시 제외 및 긴급 전보 시행
- 해당 시·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자문 서비스 및 활용 방법 안내
- 행정기관 및 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단체의 상담 서비스 안내
- 교직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소진된 교원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안내

5. 안전한 학교환경 및 건전한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교안전지킴이·배움터지킴이 또는 학교보안관 배치 확대를 통한 학교 안전 강화
-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
- 학내외 유해환경 및 우범지역 등 순찰
- 교문 출입 관리 등 학내외 안전 업무
-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 CCTV 모니터링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 피해교원 보호 등 사건 처리 공조 체제 구축
- 학교전담경찰관과 협조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시 긴급 신고 시스템 확충
- 각 교실에 교육활동 침해 긴급 신고 호출벨(SOS벨) 설치
- 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 근무 교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확대

교문 경비 및 학교 안전·보안 시설 확대
- 배움터지킴이실 또는 학교보안관초소 설치 확대
- 외부인의 학교 무단출입 통제
-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홍보
-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

학생의 인권 존중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지도방법 실천
- 학생을 인격체로 대우
- 학생의 이해와 수용을 전제로 한 훈육

민주시민 교육 강화
- 일방적인 학교규칙과 생활규칙 강요 지양
- 준수 사항에 대한 이해 및 자발적인 실천 유도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및 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 강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존중

-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존중
  - 학부모 상담 및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대응
  - 학부모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

- 올바른 학교교육 참여 유도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학습활동 지원의 중요성 안내
  - 공개 수업 및 상담주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안내

-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및 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전문가로서 동료 교원 상호 존중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
  - 자기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교사상 정립
  - 학생 교육 및 수업 연구에 상호 조력하는 문화 형성

- 동료교원과 건전한 관계 유지
  - 교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민주적 학교 운영 노력
  -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동료와 대화하고 소통

민주적인 학교규칙 제·개정

- 학교규칙에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에 관한 조항 마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기준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처리 규정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조항 포함
  - 학생 포상, 징계 및 징계 외의 지도방법 등
  -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

-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학교규칙의 제·개정과 학교규칙의 홍보
  -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학생·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제·개정된 학교규칙 안내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생활규칙 마련
  - 학생들에 대한 통제·처벌 위주의 기존 학생생활규칙 강요 방식 지양
  - 학생들 스스로 학생자치와 학급자치를 중심으로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지향
  -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애착과 관심 증진 도모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
  - 학교규칙 및 기타 준수 사항들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토론을 통한 협약 마련
  - 생활협약 마련 단계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동의 및 공감대 형성 노력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원만한 해결 도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실제 부분 참고

Ⅳ.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1. 침해 사안 처리의 기본원칙 및 침해 유형
2.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3.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4. 그 밖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Ⅳ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1. 침해 사안 처리의 기본원칙 및 침해 유형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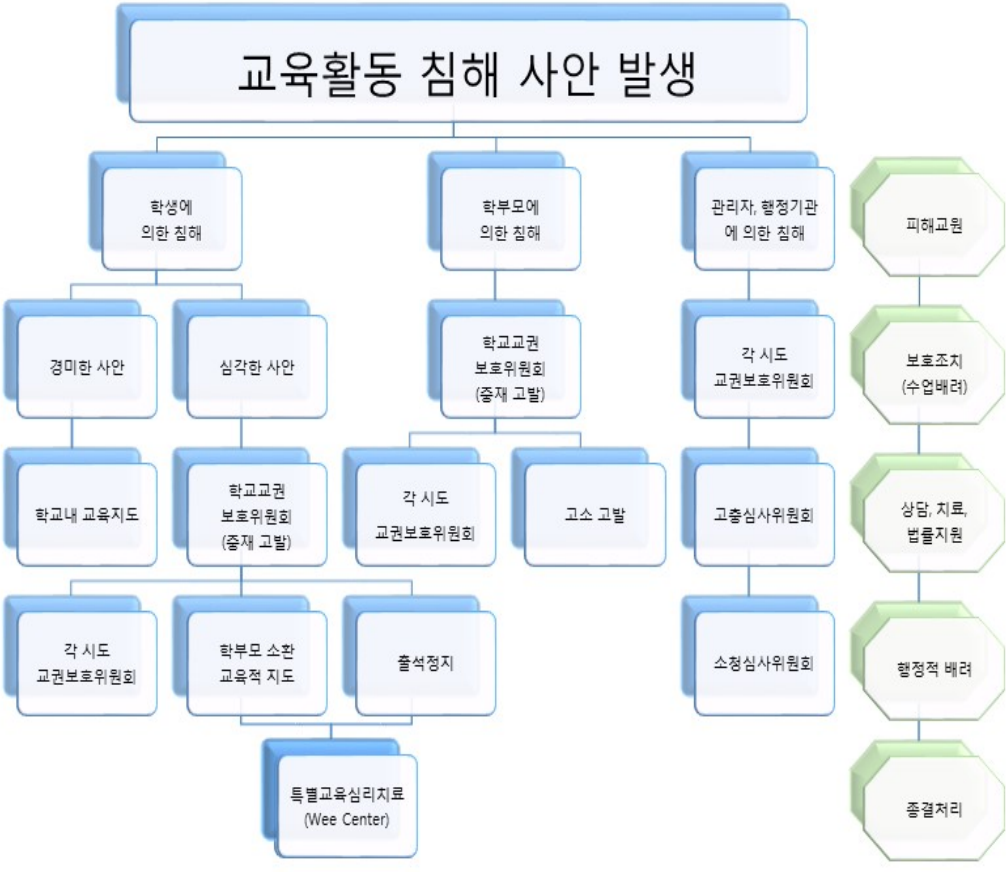

※ 사인의 경중을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특히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보고함

[그림 Ⅳ-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가. 침해 주체에 따른 대응 방법

-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 경미한 사안 : 학교 내 교육적 지도(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등)
  - 심각한 사안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중재와 고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가해학생 학부모의 소환 및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 이에 불복 시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처리를 요청
-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재와 고발
  - 중재 불복 시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가해 학부모를 고소·고발

나. 침해 정도에 따른 대응 방법

〈표 Ⅳ-1〉 침해 정도에 따른 대응 방법

구분	절차	단위학교 조치
경미한 교육활동 침해	학교 내 보고 및 조치	• 수업진행 방해, 경미한 폭언·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전에 정한 교육적 조치 실시 ※ 학교에서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조치를 실시할 경우 민원발생 및 학부모에 의한 2차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① 상급기관 즉시 보고 및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격리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흥분하여 주변 학생까지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필요시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등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청(교육감)에 즉시 보고 및 경위 파악, 관할 경찰서에 신고 • 해당 경위를 파악하여 교육청에 당일 내 보고 ※ 잘못된 소문·풍문이 생겨나 악성 소문으로 와전되지 않도록 주의
	② 상급기관 보고 이후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중재 가능 ※ 선도위원회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출석 정지 가능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활용 •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법률 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 신청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③ 후속 조치	• 학교(장)-학생·학부모-피해교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차적으로 분쟁 조정 • 단위학교의 분쟁조정이 안될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조정 ※ 피해교원에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최종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 •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 지원

다. 사안 발생 시 관계자별 대응 방법

〈표 Ⅳ-2〉 관계자별 대응 방법

담당자	기본 대응 방법
관리자 (교장·교감)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학교 대응팀 구성 및 사안 업무 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창구 단일화
	• 긴급 상황 시 112 등에 신속히 신고
	• 피해교원 상담 및 안전 조치(병가, 질병휴직 등)
	• 교원치유지원센터 협조를 통한 상담 치유 안내
	• 중대 사안일 경우 교육청 보고 및 고발 조치
	•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면담(가해자가 학생 이외인 경우)
	• 시 · 도교육청 장학사와 공조(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업무 담당자 (교권보호책임관)	• 동기, 내용, 시기, 관련자 등 조사
	• 사안 조사 내용 바탕으로 6하 원칙에 따른 상세 보고
	• 사고 경위 파악 및 경위서 작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통지
	•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면담(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 시 · 도교육청 장학사와 공조(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피해교원	• 즉시 상황에서 벗어나 동료 교원들에게 도움 요청
	• 동기, 내용, 시기를 상세히 기록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폭행의 경우 진단서 확보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교장/교감(교권보호책임관)
	• 녹음 등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 수업·담임·행정업무 일시 제외
	•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 작성 제출

교육활동 침해 대표 유형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 교원에 대한 폭언
- 교원에 대한 위협·폭행
- 수업진행 방해
- 명예 훼손
- 사이버 매체 폭력
- 교원에 대한 성희롱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 교원에 대한 폭언
- 교원에 대한 위협·폭행
- 안전사고 책임전가 및 배상 요구
- 학교폭력 책임전가 및 배상 요구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17.4.14 시행)**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특징

- 수업 방해, 폭언, 욕설, 폭행,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의 수위가 다양
  - 교사는 학생 지도 시 혼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
  - 다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역시 예방이 중요
  -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교원, 해당교육청의 변호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

-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도 방법이 중요
  -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지 않고 정당한 지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핵심
  -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학생 체벌, 인격을 모독하는 과도한 발언 등은 교육활동 침해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
  - 상대를 진정시키면서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응
  - 교육자로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
  - 당사자는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의 도움(목격자, 중재·상담자, 자료 수집자, 경찰 신고 등)도 매우 중요
  - 사건 경위서는 일지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세밀하게 자료 수집·확보

Q&A

Q **학생 생활지도 시 학생이 교사의 지도(징계)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학생의 교사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속적인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비행 등으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지역 교육청 Wee 센터 및 각종 삼당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폭행·재물손괴 등 비행 정도가 심하고 징계, 상담 등 지도에도 불응할 때에는 학교장 통고 제도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생활 문제로 학부모 상담 및 면담 요청 불응 시 학교를 방문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A 학부모 상담 내교 통지서를 1차, 2차, 3차에 걸쳐 등기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들어 가정환경의 노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통상 꺼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학생을 위해 방문이 불가피하다면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방문내용을 고지하고 동료교사와 동행하며, 반드시 학교장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 후 출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위협, 지도 불응에 대한 선도 조치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하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닙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됩니다. 교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수업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공무집해방해죄(형법 제136조, 국·공립학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사립학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징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이 가능합니다.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법원에 통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학생의 나이는 만 10세 이상입니다.

가. 학생의 폭언

1) 유형

- 학생이 교원에게 난폭한 언어 표현
- 교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 또는 저주하는 욕설
- 교원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모욕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

2) 사례

- 교외 생활지도 중에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집으로 하교를 한 상황이어서 담임교사가 지도하자 학생이 욕설
-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에게 지도교사가 교실 뒤쪽에 서 있게 했는데 반항하며 지도교사에게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학교 안 다닌다.”는 말과 함께 욕설
- 여학생이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용모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는데 지도에 불응하여 교무실로 데리고 왔으나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

3) 대응 요령

- 즉시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 확보(진술 학생의 이름, 진술 내용 등의 비밀 보호에 유의)
- 학생 및 학부모 반발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피해교사 격리 보호 및 사건 조사·보고
  - 교육활동 침해 학생·피해교원 면담 및 중재
  - 학생 및 학부모의 선도위원회 결과 불복 시 선도위원회로부터 이관된 요청 사항 심의 및 중재(학생징계, 특별교육 등)
  - 학교장에게 심의 결과 이행 권고
- 미해결 시 상급기관 지원 요청 및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고소·고발 및 보상 청구

Tip 학생의 폭언 등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

-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마라.
- 모욕적인 말은 저지하라.
- 되물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려라.
- 마음의 균형을 찾아라.
-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마라.
- 당당하게 말하라.
- 짧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 핵심을 명확하게 하라.

4)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관련교원 및 목격자 : 학교장에게 신고 ▪ 학교장 : 해당 교사 및 학생 격리 ▪ 학교장 :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중대한 사안은 시도교육청에 즉각 보고하고, 경미한 경우 학교 자체 처리	▪ 간단한 기록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장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업무담당자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피해교원 : 경위서 작성(6하 원칙 의거), 의견 확인(학생 징계 여부) – 학생 : 진술서 작성(시기, 동기, 내용 등)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해당 학생 : 학생부에 인계 ▪ 해당 교사 : 별도 장소 보호 및 수업 교체	▪ 사건 경위서 ▪ 학생 진술서 ▪ 목격자 진술서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의 진술 기회 부여 (피해교원은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선도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처리 권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상담일지
선도위원회 개최	▪ 학생 징계 및 처리 ▪ 이의제기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 요청	▪ 선도위원회 회의록
교권보호 위원회 중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 ▪ 결과 통보 및 이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불복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후 처리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추수 지도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사안 처리 결과 보고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활동 실시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병가, 수업대체 등	▪ 지도일지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2] 학생의 폭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절차

※ 심각한 사안의 경우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업무방해(사립학교), 협박, 모욕 등으로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법률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Q **학생들 앞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교사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비속어들로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반면, 학생이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전문상담 교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원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Q **지속적인 지도 및 징계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행을 되풀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속적으로 폭력이나 비행 등으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지역교육청 Wee센터 및 각종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원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폭행 재물손괴 등 비행 정도가 심하고, 징계, 상담 등 지도에 불응할 때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통해 소년보호 재판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금지된 대체벌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여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교사가 교육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간접 체벌을 실시하였다면, 추후 교사에게 불리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학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체벌을 하게 된 원인과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교사에 대한 폭언에 대해 지도를 해야 합니다.

Q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운 교사에 대하여 해당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사의 교육적 지시 불이행 및 모욕의 경우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상담전문교사에 상담을 의뢰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상급 기관에 지원 요청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폭언 및 강요를 학생이 몰래 녹음하여 교사를 협박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나요?**

A 교사의 폭언 및 강요를 몰래 녹음한 학생이 지도 대상 학생이었고 교사의 지도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것이었다면 학생의 녹음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학생이 교사를 협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무고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한 학생이 지도 대상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며 이외의 학생의 협박 내용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의 폭행

1) 유형

✔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 주먹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
- 따귀를 때리는 것
-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 옷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것 등

- 소음을 내거나 고함을 쳐서 상대방의 고막을 멍멍하게 만드는 경우도 물리력으로 행사되는 한 폭행에 해당

2) 사례

- 생활지도 중 학생부장이 학생이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자 학생은 학생부장에게 담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생부장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
- 학생이 급식실에서 급식을 기다리던 중 새치기를 하였고, 여교사가 이를 발견하여 학생을 지도하자 여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
- 고등학교에서 교내를 둘러보던 교사가 교실로 이동 중이던 학생 4명이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건물 출입구에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반말로 “훈계 그만하고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며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가격

3) 대응 요령

- 즉시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 확보(진술 학생의 이름, 진술 내용 등의 비밀 보호에 유의)
- 학생 및 학부모 반발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미해결 시 상급기관 지원 요청 및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보상 요구
- 반드시 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
- 민·형사상 소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지원단 등의 조력 요청
- 교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을 목격한 학생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다른 교원 등의 인솔 하에 즉시 목격 장소를 벗어나도록 지도하고, 이후 유사한 폭력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 실시

4)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피해교원 : 사건 현장 탈피(동료교사 도움요청) ▪ 관련 교원 및 목격자 : 응급처치, 학교장에게 신고 ▪ 학교장 :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사건 발생 보고 – 관할 경찰서에 해당 학생 신고	▪ 간단한 기록
즉각적 조치	▪ 해당 학생 : 학생부에 인계 ▪ 학교장 : 수업·담임·행정업무 제외 및 대체 교사 지정 ▪ 1인 동행하여 피해교원 후송(진단서 확보) ▪ 학교장 판단 하에 피해교원의 병가 또는 심각한 경우 질병 휴직 활용 안내	▪ 간단한 기록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장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업무담당자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사건 경위서 작성(6하 원칙 의거) –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사안 통보 – 학생의 진술서 확보(시기, 동기, 내용 등)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피해교원 의견 확인(학생 징계 여부) ▪ 시 ·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형사·민사 상 모든 법률 상담)	▪ 사건 경위서 ▪ 학생 진술서 ▪ 목격자 진술서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의 진술 기회 부여 (피해교원은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선도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처리 권고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록 ▪ 상담일지
선도위원회 개최	▪ 학생 징계 및 처리 ▪ 이의제기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 요청	▪ 선도위원회 회의록
교권보호 위원회 중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 ▪ 결과 통보 및 이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불복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록
사후 처리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추수 지도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사안 처리 결과 보고 ▪ 교권침해 학생의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활동 실시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병가, 수업대체 및 긴급전보 조치 등	▪ 지도일지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3] 학생의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절차

※ 심각한 사안의 경우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업무방해(사립학교), 폭행, 특수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법률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Q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급 교육기관 보고 및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다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게 민·형사상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교사와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A 사람에 대하여 손발을 휘두르려 하는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협에 해당되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한 행동은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한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06 판결)

Q 교원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장면을 목격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교원을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학생을 격리시킨 후, 유사한 폭력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담임교사의 상담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Wee클래스 전문상담 교사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학생의 수업진행 방해

1) 유형

- 수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 교사의 교수활동 방해
  - 동료 학생의 학습활동 방해
  - 교실 기물 파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업진행 방해 행동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준비를 하지 않거나 수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도 포함)
  - 교사에게 무례하게 반항하는 행위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반항함으로써 교수 학습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동)

2) 사례

- 여교사 수업시간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책상에 엎드리라고 명령하며 고개를 들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자 이를 장난으로 여긴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 번 고개를 들어 칠판을 바라보라고 하였으나 학생들이 고개를 들지 않아 수업진행이 안 됨
- 수업 시간에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교사가 압수하자 교사를 막아서고 옷깃을 잡고 거칠게 항의하며 핸드폰을 되돌려 줄 것을 강하게 요구

3) 대응 요령

- 교실에서 생활교육을 할 경우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 지양
- 의도된 질문으로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이 있는 경우 주의를 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
-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학생이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 동료교사의 도움 요청

- 학생들의 습관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욕설에 대한 생활교육 등을 실시

Tip 수업방해 학생과의 면담 요령

-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감정 상태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
-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사 또는 학교관리자 등과 면담에 함께 참석
- 방해한 이유에 대해 학생의 입장 경청
- 본인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학생 스스로에게 맡김
- 반드시 학생이 자발적으로 하는 반성의 사과를 받을 것
-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것
- 면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관
- 학생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신체 접촉 체벌 등 학생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
- 훈계·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을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
-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꾸짖음으로써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4)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현장에서 구두로 경고 ▪ 교실 내 지도 후 심각하면 학교장에게 보고	▪ 메모 유지
⇩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장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업무담당자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해당학생 학생부에 인계 – 해당학생의 진술서 작성	▪ 사건 경위서 ▪ 학생 진술서
⇩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의 진술 기회 부여(피해교원은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선도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처리 권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상담일지
⇩		
선도위원회 개최	▪ 선도위원회 개최 – 사안의 경중에 따른 단계적 징계 ▪ 이의제기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 요청	▪ 선도위원회 회의록 ▪ 사실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		
교권보호 위원회 중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 ▪ 결과 통보 및 이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불복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사후 처리	▪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재발 방지 추수 지도	▪ 지도일지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4] 학생의 수업진행 방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절차

※ 심각한 사안의 경우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업무방해(사립학교), 협박, 모욕 등으로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법률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Q **교사의 수업을 고의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사의 수업을 고의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기에 먼저 학생의 수업 자격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경고하고 지도하였음에도 수업 중 재차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는 학생생활 규정에 의거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도조치의 일환으로 특별 상담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조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 학부모와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앞서, 학생이 교사의 수업과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였는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였음에 대한 조치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적인 지도 불응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지역교육청 Wee 센터의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수업 중 장난을 하여 지도 차원에서 야단을 쳤는데 학생이 지도에 불만을 갖고 내가 왜 야단맞는지 알 수 없다며 이유를 말해달라고 대드는 일로 학생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좋은 방법은 없나요?**

A 교사와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싸움에 흥미를 기울이는 구경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 상황에서 상대 학생은 주변 동료들이 보고 있다는 것에 힘을 얻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서 교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교사는 학생과의 대결 구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의 근간인 교육권과 학습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사의 입장으로 학생을 눌러 동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면 그 학생은 여러 면으로 교사를 상대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교사가 교육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을 때 교육활동 의 존립에 더욱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에 교사가 학생과의 상대로 논쟁이나 갈등의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수업을 잘 마무리한 후에 교실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 분위기를 달리하여 대화를 재개하든지, 애정 어린 상담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사가 잘 정리하여 알려주고 재발 예방의 지도를 해야만 합니다. 단 학생이 잘못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정도가 중한 경우 이를 학생부에 넘겨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라. 명예훼손 및 사이버 매체 폭력

1) 유형

-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행하는 인신공격적인 행동(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 가능)

- SNS, 학교 홈페이지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 및 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행위(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2) 사례

- 학생과 평소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고 수업 태도도 괜찮았던 학생인데, SNS에서 심한 욕설로 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

- 상습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지 않는 사유로 학생을 교실 뒤편에 서서 수업에 참여하게 하였으나, 거친 항의와 함께 무단으로 학교로 이탈하여 귀가한 후 부모에게 "교사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거짓 진술하며 본인의 친구들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움

3) 대응 요령

명예훼손의 경우

- 구두, 문건,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 기재하는 경우
  -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해당기관에 관련 글을 즉각 삭제 요구
  - 게시글 원본 또는 사본,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 확보
  -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기사 요구

- 욕설·폭언을 통한 모욕, 전보 요구나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 사직 강요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서면 확보
  - 주위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 확보
- 허위 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경우
  - 반박 자료 준비 후 명예훼손 사유로 적극적인 맞고소
  - 동료교원 혹은 학교 차원의 탄원서 제출 요청
- 민·형사상 소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지원단 등의 조력 요청

사이버 매체 폭력의 경우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보존
-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 게재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여 증거 자료로 확보
- 학생이 특별한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인지시키고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
- 머리글자나 이름 중 일부만 노출된 상황이라도 그 표현이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표현하지 않도록 지도
- 특정집단·단체의 구성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라면 특이한 이름이나 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허위 사실을 표시하지 않도록 지도

4) 사건 처리 절차

명예훼손 및 사이버 매체 폭력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해당교사 : 학교장에게 보고, 사건 경위서 작성 (6하 원칙 의거) ▪ 학교장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	▪ 사건 경위서
즉각적 조치	▪ 학교장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심각할 시 교육활동 보호 대응 팀 구성, 의사소통 담당(대변인) 교사 지정 및 대응창구 일원화 ▪ 학교장 판단 하에 피해교원 수업대체 또는 병가 조치 ▪ 시 ·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 게시물 삭제 요청 –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등에 구제 신청	▪ 사건 경위서
조사 및 사실 확인	▪ 업무담당자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자료수집 : 언론 보도 내용, 인터넷 게시물 출력 보관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상대방(학생, 학부모)의 요구사항 서면 확보	▪ 목격자 진술서 ▪ 자료수집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중재 – 피해교원 및 학생, 학부모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합의점 모색 – 사안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 요청	▪ 학생 진술서 ▪ 학부모 진술서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회의록
분쟁 비화 시	▪ 사법기관 고발 시 법적 대응 방안 모색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법률지원단과 협의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 –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언론사의 정정 보도 요구	▪ 시도교권 보호위원회 조정신청서
사후 처리	▪ 해결 확인(정정보도, 게시물 삭제 등) ▪ 재발 방지, 추수 지도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의 전문 상담치료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활동 실시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심리치료, 병가, 수업대체, 전보 등	▪ 지도일지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5] 명예훼손 및 사이버 매체 폭력 사건 처리 절차

※ 심각한 사안의 경우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업무방해(사립학교),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법률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Q **수업 시간에 교사의 행동을 허락 없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협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사의 허락 없이 행동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형법 상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해당되는 범죄가 있다면 형사 고소 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학급의 상황을 하루 종일 녹음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위협을 하고, 무례한 언행과 폭언을 할 뿐 아니라 '담임선생님은 거짓말쟁이 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퍼트리고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위 녹음 사실은 불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이외의 학부모의 언행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교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언비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악성 소문을 들은 이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언론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이란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언론이란 엄청난 전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고, 언론에 의한 피해를 더욱 쉽게 구제 받기 위하여 언론중재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은 학교가 되어야 하고 교사 특정인에 대하여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은 교사 개인이 되어 언론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언론중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의 잘못된 제보로 언론보도에 의한 교사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언론사에 서면을 통하여 정정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는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정보도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의 제기, 형사고소,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마.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

1) 유형

✔ 육체적 성희롱

- 필요 이상으로 오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 몸을 접촉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는 행위
- 친근감의 표시라며 머리, 어깨, 배, 허리, 귓볼 등을 만지거나 옷깃을 고쳐 주는 행위
- 지나가며 가슴을 스치거나, 의복의 특정 일부를 만지거나 들추는 행위
- 다정한 듯 어깨동무를 하거나 어깨 안쪽을 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 수업 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 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며 말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농담으로 특정 신체 부위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특정 신체 부위를 들여다보는 행위
-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학생끼리 돌려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2) 사례

✔ 중학생이 쉬는 시간에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여교사의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 중학교 복도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좋아한다고,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교사를 벽에 밀어 붙이고 나가지 못하게 함

✔ 잡담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중학생에게 교사가 “이야기 그만하고 수업을 듣자.”고 말하자 “쭉쭉빵빵 섹시한 언니가 수업을 하면 들을 수 있다”고 함

✔ 중학교 남학생이 인쇄물을 나눠주는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누나! 우리 사귀자.”고 말하고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림

✔ 평소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 중학교 남학생에게 여교사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지도하자 잠시 후 고개를 숙이고 자위행위를 함

3) 대응 요령

-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일관되고 안정된 태도를 유지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즉시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동료교원에게 도움 요청
-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행동, 자신의 반응과 기분을 메모해 둠
- 성희롱 및 성폭력은 범죄임을 인지시킴
-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위 교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
- 학교 관리자, 전문 상담기관에 신고, 또는 상담을 의뢰하고 심리적 극복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 요청
-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에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예방

4)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피해교원 : 사건 현장 탈피(동료교사 도움요청) ▪ 관련 교원 및 목격자 : 학교장에게 신고, 피해교원과 학생 격리 ▪ 학교장 :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사건 발생 보고 – 관할 경찰서에 해당 학생 신고 ▪ 해당 학생 : 학생부에 인계	▪ 간단한 기록
조사 및 사실 확인	▪ 학교장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업무담당자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사건 경위서 작성(6하 원칙 의거) –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사안 통보 – 학생의 진술서 확보(시기, 내용 등)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시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형사민사 상 모든 법률 상담)	▪ 사건 경위서 ▪ 학생 진술서 ▪ 목격자 진술서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의 진술 기회 부여 (피해교원은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선도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처리 권고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록 ▪ 상담일지
선도위원회 개최	▪ 학생 징계 및 처리 ▪ 이의제기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 요청	▪ 선도위원회 회의록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재 ▪ 결과 통보 및 이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불복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록
사후 처리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추수 지도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사안 처리 결과 보고 ▪ 교권침해 학생의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활동 실시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병가, 수업대체 및 긴급전보 조치 등	▪ 지도일지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6]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 사건 처리 절차

※ 심각한 사안의 경우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업무방해(사립학교),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으로 처벌 가능

관련 법률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Q&A

Q **학생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받나요?**

A 학생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정의)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성적 언동은 현행법상의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교사의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집해방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업무방해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Q **수업 중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수업 진행 중인 여교사의 스커트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친구들 간에 웹상에서 돌려가며 보다가 적발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사이버 폭력은 형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교사에게 매우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사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나, 교사가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장은 학급 편성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 양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급을 다른 학급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

3.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특징

-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이 학부모로 확대
-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제기나 소송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증가
- 학부모에게는 자녀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보장되나 이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 학교교육 참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

  *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학부모가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Q&A

Q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 또는 학교에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되나요?**

A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학부모의 이유 있는 이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항의 자체만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의하는 과정에 교사 및 학교에 대한 폭언· 욕설·협박이 있었을 때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에 의한 폭언·욕설·협박은 교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적어 녹음·녹화,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즘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첫째,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교사는 사고 경위서, 일지, 진단서 등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청 고문 변호사 법률 상담 후, 경찰에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의한 판단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기 전에 피해자 측이 합의 등을 조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즉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하거나, 가해자 측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무작정 응하는 것 보다는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 본 후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부모님의 담임교체 요구에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담임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학부모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므로, 교육활동에 관한 분쟁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활동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잘 중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나요?**

A 「교육기본법」제13조 제2항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의 태도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과오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의하는 과정 중에 교사 및 학교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 및 폭력적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행하는 학부모의 부당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부모의 부당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생 생활 지도와 학급 운영 등 교원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교원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지나친 학생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상담 시 동료 교사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Q **학부모가 항의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열지 않을 수 있나요?**

A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근거법령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다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부모가 항의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소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교육활동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부모가 수시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수업과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교사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A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의 행동이 교사를 힘들게 함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길게 통화를 할 사안이면 면담 시간을 정해서 예약하여 방문하도록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시간을 오후 몇 시 이후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학부모의 폭언·폭행

1) 유형

- 학부모가 교원에게 난폭한 언어 표현
- 교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 또는 저주하는 욕설
-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교원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협박
- 힘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위협
- 교원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모욕
-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 주먹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
  - 따귀를 때리는 것
  -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
  -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
  - 옷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것 등
- 소음을 내거나 고함을 쳐서 상대방의 고막을 멍멍하게 만드는 경우도 물리력으로 행사되는 한 폭행에 해당

2) 사례

- 학부모가 평소 담임교사에 대해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 문병을 안 온다. 구구단을 외우는 숙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죽으면 책임을 질 거냐? 학부모 총회에서 학급 담임과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등 반감을 내비치며 여러 차례 폭언
- 수업 중 장난을 치는 여학생을 훈계한 후 “남학생들 사이로 가라”는 담임교사의 말에 교사가 남학생들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했다며 학생의 어머니가 교장실로 찾아가 항의하고 학생의 아버지는 수업 중이던 교사를 뒤에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행
-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만 차별하여 두발지도를 한다고 격분하여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교사를 폭행

3) 대응 요령

- 흥분된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이성을 가지고 냉정한 자세로 대처
- 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사고 현장 탈피 및 주변 교원들에게 도움 요청
- 학교장은 교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 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 조치(형사상 처벌 가능)
  - 학교장이 직접 피해교원을 면담하여 사안을 파악
  -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며 동행자를 지정하여 보호
  - 2차 피해 발생 방지 및 피해교사 업무 대행자 지정
- 사건 증거 자료 확보
  -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는 진단서 등 증거 자료 확보
  - 폭언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녹취한 자료 및 목격자 진술서 등 확보
- 사건 경위서는 일지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
- 사안 발생 즉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 고소·고발 등 사법 절차를 포함한 해결 방안에 관해 교권보호조사관(담당 장학사) 및 고문 변호사와 협의(형사·민사 상 모든 법률 상담)

Tip 사건 증거 자료의 종류

① 서면 자료 :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주변 목격자의 진술서 등
② 사진 자료 : 상처가 있으면 즉시 촬영
③ 사이버 자료 : 이메일, 채팅 자료,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④ 녹취 :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녹음
⑤ 휴대폰 : 문자, 음성 메시지 등 저장
⑥ 진단서 : 폭행 사건의 경우

4) 사건 처리 절차

학부모에 의한 폭언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관련 교사 및 목격자 – 학교장 및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신고 – 관할 경찰서에 해당 학부모 신고 ▪ 해당 교사 : 보호 및 안전조치, 사건 경위서 제출, 일지 작성(해당 학부모와 접촉 최소화)	▪ 사건 경위서
사실 확인 자료 수집	▪ 학교장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업무담당자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자료수집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학부모 요구사항 서면 확보 ▪ 교원단체 또는 전문가 상담 요청	▪ 사안조사보고서 ▪ 교권보호위원회 자료 제출 ▪ 목격자 진술서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록
사안 해결 시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결과 통보 및 이행	▪ 손해배상 청구 등
사안 미해결 시	▪ 고소·고발 및 소송 – 시 · 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도움 요청 – 시 · 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법률 상담	▪ 고소·고발장 작성 ▪ 민·형사조정의 신청
사후 처리	▪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개인상담 신청서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7] 학부모에 의한 폭언 사건 처리 절차

※ 심각한 사안의 경우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업무방해(사립학교), 협박, 모욕 등으로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법률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부모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관련 교사 및 목격자 – 사안보고 : 학교장,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 관할 경찰서에 해당 학부모 신고 ▪ 해당 교사 : 보호 및 안전조치, 사건 경위서 제출, 일지 작성(해당 학부모와 접촉 최소화)	▪ 사건 경위서
사실 확인 자료 수집	▪ 학교장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자료수집 : 목격자 진술 확보 – 학부모 요구사항 서면 확보 ▪ 시 ·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형사민사 상 모든 법률 상담) ▪ 교원단체 또는 전문가 상담 요청	▪ 교권보호위원회 자료 제출 ▪ 목격자 진술서 ▪ 진단서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분쟁조정 신청(7일 이내 회의 개최) – 심의결과 학교장이 공제회에 보상, 소송대행 지원 신청 가능 –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 가능 ▪ 시 · 도교육청 협조 요청	▪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록 ▪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조정신청서
법적 조치	▪ 합의가 어려울 시 민·형사소송 제기 ▪ 시 · 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및 교원단체 지원 요청 – 변호사 선임 후 적극 대응 ▪ 형사 : 경찰에 고소·고발 ▪ 민사 : 법원에 피해 보상 요구	▪ 고소·고발장 작성 ▪ 민·형사조정의 신청
사후 처리	▪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개인상담 신청서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8] 학부모에 의한 폭행 사건 처리 절차

※ 심각한 사안의 경우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업무방해(사립학교), 폭행, 특수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법률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A

Q **교사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하는 것을 상대방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나요?**

A 대화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녹음은 아니며,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박이 가해지는 경우 이러한 협박을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증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전화로 계속하여 비속어를 쓰고 욕을 하며 모욕을 할 경우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전화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공연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화내용에 따라 협박, 공갈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둘만의 통화라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교사에게 협박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은 처벌 가능한가요?**

A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리겠다."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협박으로 생각되는 언동을 했다고 곧바로 협박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폭언 등을 당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그 상황과 상황에서 쓰였던 언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기록하고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의 경우는 그것을 보관해두며, SNS나 채팅방에 언급된 경우 관련 화면을 스캔하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학부모가 학생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로 찾아와 책상 위의 서류 등 집기를 부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수업, 학사 관련 사무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행 행위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학부모가 교무실이나 교실에 난입하여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부모의 부당 행위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 또는 문제 제기의 정도를 넘어서는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행동을 말합니다. 최근, 학부모가 교무실이나 교실에 난입하여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의 경우 진단서, 목격자 진술, 주위의 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미해결 시 시·도교육청 등 상급 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 학교폭력 민원

1) 유형

-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가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거나 적절한 사후 대책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감정이 격화되고 분노로 표출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피해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과하기보다 오히려 유별난 학생·학부모로 매도하여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

2) 사례

-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흥분하여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인 가해학생에게 “너도 맞아서 휠체어 타고 다닐래?”라는 말과 심한 욕설을 퍼붓고 담임교사에게는 “지난 3월에도 아이가 얼굴에 연필로 찍혀서 왔는데 부모한테는 얘기하지도 않고, 네가 선생이냐?”라며 폭언을 하며 난동
-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앙심을 품은 한 학생의 학부모와 할아버지가 학교를 방문, 할아버지가 분에 못 이겨 폭언과 함께 준비해 온 달걀로 교감의 머리를 폭행

3) 대응 요령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면담 요령

- 가해학생 학부모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 행위는 정확하게 통지
-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고지

- 피해자 측에 대한 가해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킴
- 사안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하게 설명
- 가해학생에게 교육적인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
- 이번 일로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낙인찍히지 않을 것임을 확인
- 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면담 요령

- 우선 학부모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
- 학부모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야기를 경청
- 학부모가 말하는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
- 학생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
-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 표시
- 피해학생·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인지
  (화해,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 추후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
-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
-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사건 은폐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하여서는 안 됨

4) 사건 처리 절차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절차

학부모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한다.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지요?)

↓

상대학생의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현재는 신체적인 피해로는 ○○하고 심리적으로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긍정적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두 학생 모두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자녀지도에 도움이 될지 어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해학생의 부모의 경우 자신의 학생이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므로 담임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면.....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진실과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가해 측에서 피해학생의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알린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와 그 과정에서 ○○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9]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절차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절차

학부모의 감정이 격양됨을 이해한다.
(많이 놀라셨죠?)

↓

학부모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야기를 경청한다.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한다.
(○○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힘 내세요.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학생의 학교폭력을 언제, 어떻게 알게되셨습니까? / 학생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나요? /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나요?)

↓

학생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고 유감입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요?)

↓

추후 처리과정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앞으로 이 일이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면.... 식으로 진행됩니다.)

↓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와 그 과정에서 ○○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충격 없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10]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절차

Q&A

Q **학생과 학생이 부딪혀 앞니가 부러져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를 받았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가 평생 동안 치아를 치료할 비용까지 교사에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요구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연락을 취하여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한 후 대응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송비용 및 법률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 학교 안전사고 민원

1) 유형

-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또는 교사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민원 제기
- 상급의 교육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을 이용하여 압박
-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에게 금전 보상 요구
-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담임 교체, 전보, 징계 등 부당한 인사 요구
-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 언론 유포
- 과도한 민·형사 소송 제기

2) 사례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미술시간이 끝난 직후 쉬는 시간에 반 친구가 던진 찰흙에 왼쪽 눈을 맞아 수정체가 손상되어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였으나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
- 고등학교 축제기간 중 한 학생이 칵테일 쇼의 일환으로 불쇼를 하다가 불이 꺼지지 않아 화상을 입자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Tip 법원의 판례

체력검사 실시 중 학생의 사망 사고

[사건개요]
학교에서 체력검사 실시 중 학생이 사망. 학부모는 학생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학교장과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함.

[처리결과]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할 의무가 있음.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므로 법원은 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고 판결함.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8다5417 판결]

점심시간 중 학생의 상해 사고

[사건개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 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하였음.

[처리결과]
점심시간은 오후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가해자는 사고 당시 18세가 넘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 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하며, 피해자와도 친한 사이였음.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 능력과 성향, 교우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함으로 이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다13646판결]

졸업여행 중 휴식시간에 일어난 폭력 사고

[사건개요]
중학교 학생들이 졸업여행 중 휴식시간에 숙소 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피해학생이 한 쪽 눈을 실명.

[처리결과]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떠나게 되어 평소와 달리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 지기 쉬운 상황에서 심한 장난을 한다든가 서로 간에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장이나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은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1999.09.17. 선고 99다23895 판결]

3) 대응 요령

- 상당 기간 경과 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녹취록, 기사 사본 등을 확보 및 보관
-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학교 관리자나 사건 관계자 등의 병원 방문이나 성의 있는 언행 등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대처
-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꼬리를 잡고 논쟁 금물
-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건의 본질은 제쳐두고 감정을 상하게 하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심
- 잘못된 사실 관계가 언론 등에 공표되지 않도록 보안
- 학교안전사고가 소송으로 비화 시 소속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지원 요청
- 교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내

1. 학교 안전사고 사전 예방 노력

- 안전사고의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교육활동 중에는 가급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학급 전체를 상대로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질서를 위한 대리인 지정
-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체육(준비운동 포함), 과학실험 실습시간, 교외현장학습 시 사전교육 실시
  - 학생들의 지병을 확인하여 격렬한 체육활동에서 제외시키는 등 특별 관리
- 현장학습·수학여행·특기적성교육 등의 교육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운영
-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
  - 베란다에서 장난 또는 이동 금지 및 안전장치 완비, 고층교실 유리창 청소 금지, 위험한 학교 시설 설비의 수리·보완 등
- 학생에 대해 사적인 지시 및 심부름 금지
- 학생 간 집단따돌림 또는 폭력발생 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 관찰일지 및 상담일지 작성
- 학교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시
-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 필요

2.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 대처

- 피해자의 후송 등은 신속히 119에 연락하여 처리
-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하되 책임 있는 자(보건교사, 응급처치자격증 소지자 등)로 하여금 수습
- 소송 및 각종 조사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하고 관련 기록 확보
- 사고 발생 시부터 사고 종결 시까지 진행 과정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여 자세히 기록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후 대처

-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
- 성적·출석 처리 등 가급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
- 사고에 대하여 경험 있는 자(전문가, 학교안전공제회 등)와 협의하여 처리
- 가급적 치료비, 위자료 등은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노력하되, 합의서, 영수증 등은 반드시 확보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교원은 개인적인 보상을 구두 또는 문서 형태로 약속 금물
- 사고 처리 과정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당사자와 협의
- 교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우선 배상(교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4)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해당교사 : 전화·구두로 즉시 보고	▪ 간단한 기록
응급 조치	▪ 관련 교사 및 목격자 : 현장 응급조치 및 보건실, 병원 이용(담임 또는 보건교사 반드시 동행) ▪ 현장 보존	▪ 응급조치기록 ▪ 진단서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해당교사 : 학교장 보고, 학부모 연락 ▪ 학교장 : 중대 사안 시 교육청 보고 ▪ 학교측 창구의 단일화	▪ 목격자 진술서
사고 경위서 작성	▪ 해당교사 : 사고 경위 파악 – 6하 원칙에 따라 일지 작성	▪ 사건 경위서
공제회 사고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통지 (http://www.schoolsafe.or.kr/) ▪ 치료 후 공제급여 청구 – 학부모 송금 및 처리 결과 통보	▪ 안전공제회 보상지급 신청서
사안 종결	▪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책 강구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11] 학교안전공제회 사건 처리 절차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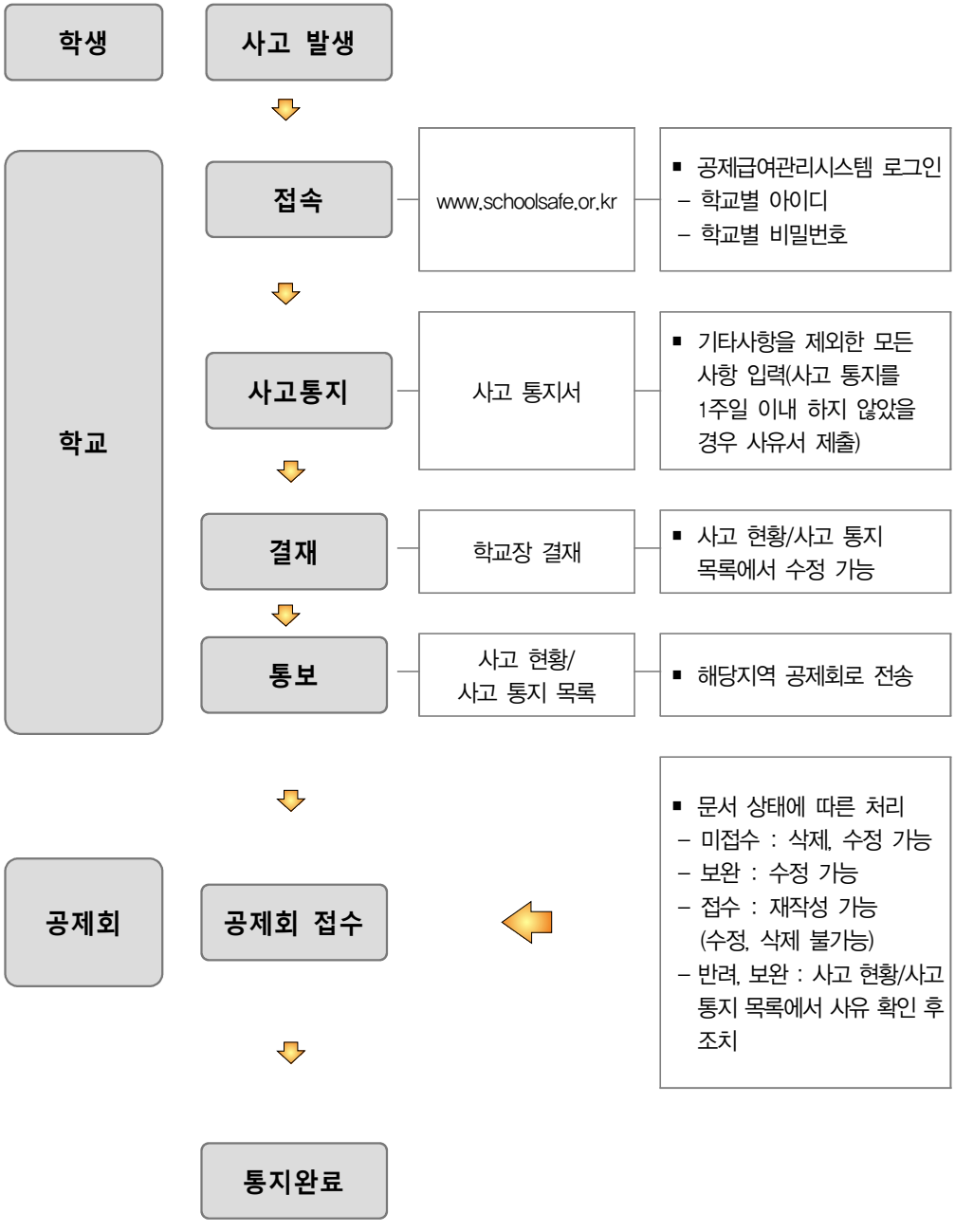

[그림 Ⅳ-12]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방법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청구 방법

학생	치료 후		
학교	접속	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교별 아이디 – 학교별 비밀번호
	청구	공제급여청구/사고조회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중 택일	▪ 제출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청구권자의 통장 사본 – 진단서(50만원 초과 시) – 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출력	사고현황/공제급여 청구 목록	▪ 학교장 직인, 청구인 서명(날인) ▪ 제출서류
	결재	학교장 결재	▪ 내부결재한 공제급여 청구서는 자체 보관하고 공제회 발송 공제급여 청구서는 학교장 직인 날인
	발송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	▪ 관할 시·도 공제회로 우편발송
	상태 확인	사고현황/공제급여 청구 목록	▪ 미접수, 접수, 결재완료, 결정완료로 확인 가능 – 미접수 : 미발송 또는 지급심사 시작 이전 – 접수 : 문서접수 및 공제급여 시 지급심사 시작 – 결재완료 : 공제급여 지급 심사 완료 – 결정완료 : 지급완료 ※ 미접수 상태에서만 수정 가능
공제회	공제회 통보	←	학교 : 공제급여 결정통보서 학부모(청구인) : E-mail 또는 SMS

[그림 Ⅳ-13]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청구 방법

Q&A

Q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교원이 책임을 지는 보호감독의 범위는 학교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설립목적에 의해서 실시되는 교육활동과 이에 수반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는 활동에 한정 됩니다.

보호감독의무 범위에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가해자가 있을 경우 그 가해자의 분별능력(변식능력, 법에 규정된 보통 나이로 보아 만 12세 또는 13~14세),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수업 중 관리자의 호출로 교장실에 간 뒤 학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A 교사는 수업 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교장선생님께서 수업 중 호출을 한다면 정중하게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있으나 결과적으로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활동 시간에는 교사를 부르는 것은 금해야 할 사항입니다.

Q **하교 지도란 무엇이고, 그 책임은 교사에게 있나요?**

A 학교에서 말하는 하교 지도란, 학교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이 학교에 도착한 순간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 감독 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 등·하교 중의 사고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반 교실에서 과학 실험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직무 상 주의 의무 소홀이 인정되나요?**

A 위험요인이 많은 실험 수업을 할 경우 지도교사는 특별히 안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교원의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학교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Q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 개시 1시간 전인 08:00경에 등교하여 시소 놀이 시설에서 혼자 놀다가 실족하여 안면열상(顔面裂傷) 상해를 입은 경우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조기 등교한 학생이 학교 내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문과 교실을 개방하고 등교하는 학생을 수용하였다면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Q **학생사고가 교사의 책임이라고 판단될 때, 어느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A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의 소홀, 사고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한 부주의,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사전교육 및 주의지도, 사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사고가 교사의 책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직면하는 상황은 모두 3가지입니다. ① 경제적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상의 책임 ② 교사의 체벌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학생을 다치게 했을 때 형사책임 ③ 징계책임 등이 그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피해자의 부모가 ①교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②교육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배상을 받은 후에 교육감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공무원인 교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교사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됩니다.

형사상 책임은 체벌처럼 교사의 행위가 학생을 다치게 하는 사고의 원인인 경우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업무상 과실 책임 등을 묻게 됩니다.

Q **교사들이 돈을 각출하거나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금으로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는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비율이나 금액, 형사상 처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사정을 무조건 참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부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급식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된다고 하던데 모든 급식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나요?

A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급식 업체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 명백하지 않거나 사고 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밝혀 그 책임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 학부모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교육활동 참여자'라고 해서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학부모가 학교버스에 학생보호를 위해서 탑승하거나, 학교 앞 교통지도를 하거나, 급식활동을 보조하거나,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학교 행사 도우미로 참여하는 등 매우 다양한 경우가 가능합니다.
※ 단, 내부결재나 학교장의 승인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라. 부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 및 민원 제기

1) 유형

- 학부모의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
- 학부모의 교사의 성적처리, 생활 지도 등에 대한 과도한 민원제기

2) 사례

-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부 등에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동일한 민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제기

- 학부모가 교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방문하는 등을 통해 수업과 업무를 방해
- 교사의 생활지도 및 수업 등에 불만을 지닌 학부모가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교사 교체를 요구

3) 대응 요령

- 교사의 교무일지, 학급 일지 등 학생 지도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기록 확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갈등 중재 및 해결방안 모색
  - 피해 교사 격리 보호 및 사건 조사·보고
  -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대상 면담 및 갈등 중재 실시
  - 학교장에게 심의 결과 이행 권고
- 미해결 시 상급기관 지원 요청 및 심각한 피해 발생의 경우 고소·고발 및 보상 청구

4) 사건 처리 절차

사안 발생 즉시 신고	▪ 관련 교사 및 목격자 – 학교장 및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 해당 교사 : 사건 경위서 제출, 일지 작성(해당 학부모와 접촉 최소화)	▪ 사건 경위서
⇩		
사실 확인 자료 수집	▪ 학교장 : 업무담당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 업무담당자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자료수집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학부모 요구사항 서면 확보 ▪ 교원단체 또는 전문가 상담 요청	▪ 사안조사보고서 ▪ 교권보호위원회 자료 제출 ▪ 목격자 진술서
⇩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피해교원과 침해 학부모 간 진술 기회 부여, 중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불복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회의록
⇩		
사안 해결 시	▪ 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결과 통보 및 이행	▪ 손해 배상 청구 등
⇩		
사안 미해결 시	▪ 고소·고발 및 소송 – 시 · 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요청 및 – 시 · 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법률 상담	▪ 고소·고발장 작성 ▪ 민·형사조정의 신청
⇩		
사후 처리	▪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개인상담 신청서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14] 부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 및 민원 사건 처리 절차

Q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 등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의 경우, 해당 학급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학부모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갈등 해소가 어려울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의 교무일지, 학급일지 등은 교사의 지도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는 기록이므로, 평소 기록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에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Tip **학부모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

- 소극적 대응은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학부모가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등 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집단성(개별성)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민원내용의 적절성,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교육자로서 품위와 당당한 자세를 견지한다.
- 민원과 관련된 사건 경위서는 일지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 · 보관한다.

4. 그 밖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특징

-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행정가, 운영자, 교원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경우

- 침해 발생 요인
  - 교원의 임무에 대한 이해 부족
  -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
  - 권한의 남용에 대한 이해 부족
  -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 빈번한 침해 사안
  - 수업이나 학생지도 중 행정업무 처리 요구
  - 수업·지도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교사의 전문성 침해
  - 수업 중 예고 없는 교실 방문으로 인한 수업 차질
  - 학부모와의 분쟁에 대하여 교사에게 일방적 합의 강요
  - 위법·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 처분
  -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적 언행

Q&A

Q **학교에서 심적 및 물적인 불이익 또는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에 구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학교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교육활동을 침해 받았을 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부당노동행위구제청구, 성희롱, 성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있습니다.

Q **동료교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 요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료교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 간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동료 교사 및 관리자, 교육청 담당자 등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각 시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요구합니다. 해결이 어렵고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되는 교육청 홈페이지나 감사담당관 내부 고발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고충심사 의결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행정 소송을 합니다.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 긴급 전보를 요청합니다.

Tip 교원의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구제 제도

구분 \ 종류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권위원회 진정
누가		공립교원 사립은 고충심사제도 없음	공·사립교원	노동조합원/노동조합 비조합원은 신청권한 없음	공 · 사립교원
청구내용		불이익 처분이 아닌 고충의 해결	불이익처분	사용자의 노동 기본권 침해 행위	성희롱, 성차별 인권의 침해
결정의 효력		행정적인 명령	공립은 기속력 있으나 사립은 없음	불복하는 측에서 노동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불복할 경우	청구 인정	불복 못함 (피청구인)	공립은 불복 못함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노동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청구 기각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 소송 (청구인)	공립은 행정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재단 상대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특징		매우 다양한 고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음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노동조합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기한		없음	30일 이내	3개월 이내	없음
단계		고충심사위원회 (시 · 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국공립(교육청징계위) 사립(징계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
근거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노동위원회법	국가인권 위원회법

✓ 성희롱 고충 상담 처리 절차

고충 신청	▪ 관련 교사 및 목격자 : 학교장 및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에 즉시 신고 –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 가능, 즉시 ONE-STOP서비스에 신고 ▪ 학교장 : 시도교육청에 사건 발생 보고	▪ 교권침해사안보고서 ▪ 교권침해진술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상담 및 조사** ⇩	▪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에서 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상담 조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진행 – 사실 파악(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 피해교원 요구사항 파악 – 가해교원 의견진술기회 부여 –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 –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 중지 ▪ 비공식, 공식 절차를 분리하여 탄력적 운영 ▪ 비밀유지 및 신속성이 중요	▪ 고충접수 및 처리 대장 ▪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 ▪ 피해사실 확인서
조사결과 처리	▪ 조사의 완료 즉시 학교(기관)장에게 결과 보고 ▪ 학교장 : 시도교육청에 조사 결과 보고 ▪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교육청에서 성희롱 심의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성희롱 고충 사안 조사결과보고서 ▪ 성희롱심의위원회 회의록
⇩ **조사 종결**	▪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 종결 ▪ 성희롱에 해당될 경우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 당사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학교장 : 시도교육청에 처리 결과 보고	▪ 결과 통지서

※ 본 절차는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그림 Ⅳ-15] 성희롱 고충 상담 처리 절차

Tip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명한 사람)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제외하고 기관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권장)

Q&A

Q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직접 하여야만 성희롱으로 성립 되나요?**

A 성희롱 피해자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문화 때문에 거부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전화, 메일, 문자 메시지, 주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거부하였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Q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A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 하여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A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된 언동의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재미삼아 또는 직장 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여 한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간에 성적 언동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제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까를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술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거나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인권 침해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희롱을 당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항의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기고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의 직장생활 중에서 잠깐의 실수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직장생활 중에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불필요한 성적 농담을 하지 않고,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즉각 이를 중지합니다.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했다고 인식했을 때 즉각 사과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Q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A 조건형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또한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성적 굴욕감 등을 유발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V.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

1.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2. 피해교원 지원

V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

1.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가. 법적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역할

- 상시적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
  - 교원·학생 대상 예방 교육 및 학생과의 소통·코칭 연수 실시
- 치유 상담 지원
  - 상근 치유상담사를 통한 상시적 상담 지원
  - 온라인 상담(메일, 채팅 등)을 도입하여 비밀보호 및 쉬운 상담 지원
  -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연계한 교원 맞춤형 상담 지원
  -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연계 상담 지원
- 심리 치료 지원
  - 상담 지정 병원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 및 치료
  - 상담 지정 병원 이외의 지역사회 병의원과 연계한 교원 맞춤형 상담 및 치료
- 법률 상담 지원
  - 상근 변호사를 통한 상시적 상담 지원
  - 시·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및 고문변호사와 연계한 맞춤형 상담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맞춤형 치유 지원
  - 피해교원에 대한 정신·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 피해교원 복귀 후 사후 관리 수행
  - 복귀 후 장기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지원 서비스

Tip

시·도교육청별 교원치유지원센터 대표 및 홈페이지 주소

권역	교육청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수도권	서울	02-3999-093	-
	인천	032-629-9995	http://www.dodum.info
	경기	031-820-0639	https://edup.goe.go.kr/eapc
	강원	033-258-5621	http://www.gwe.go.kr/mbshome/mbs/kr/subview.do?id=kr_020901000000
충청권	세종	044-320-2234	-
	대전	교육활동보호종합센터 042-616-8205 에듀힐링센터 042-865-9361	http://www.dje.go.kr/forteacher/main.do
	충북	043-290-2175	-
	충남	041-640-7331	-
호남권	광주	1644-9575	http://forteacher.gen.go.kr
	전북	063-239-3286	-
	전남	061-260-0528	-
	제주	064-710-0343	http://www.jje.go.kr/index.jje?contentsSid=1366
영남권	대구	053-231-0318	http://www.dge.go.kr/forteacher/index.do
	부산	051-860-0443	http://eapc.pen.go.kr/
	울산	052-210-5614 052-255-8191	-
	경북	054-805-3369	http://gbe.kr
	경남	055-268-1125	http://gne.go.kr

2. 피해교원 지원

가. 치유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신속 대응 및 피해교사 보호시스템 구축

- 피해교사에 대한 개별적인 제도적 지원
  - 학급 교체 지원, 긴급전보
  - 충분한 휴식, 접근금지 명령, 교사와 학생 간 사과와 용서 프로그램
  - 심리적 외상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병원비 지급 등

- 교내 동료교사와 함께하는 문제 해결 지원
  - 별도 시설이나 병원에서 지원하는 치료보다 단위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치유 지원
  - 교내 치유회복 동아리 지원, 교내 힐링캠프 지원, 동료 교사 참여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실시, 학교로 찾아가는 솔루션 위원회 등

- 심도 있는 심리 상담과 외상치료에 집중
  - 피해교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유적 개입
  - 피해교원이 의무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선택

- 법률 지원
  - 각 시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 교사 개별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하여 상시적인 상담·지원 요청 가능

✔ 힐링 연수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힐링 연수'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우선 선발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희망하는 힐링 연수 기관의 힐링 연수 요청 시 연수비 지원

✔ 다양한 전문 인력 확보로 One Stop 서비스 지원

- 법률 지원, 심리치료, 의료전문가 지원, 상황별 솔루션 방안 지원, 다른 전문가 연계 등 One Stop 지원 체제 구축
- 피해교원 치유지원센터는 독립 법인화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

나. 복귀 지원

✔ 복귀 후 적응 지원

- 정기적 방문 및 내방 상담, 상시적 전화 상담 서비스(Helpline) 구축, 추적 평가 시스템 구축

✔ 복귀 후 행정 지원

- 출장 처리, 업무 경감, 힐링 프로그램 참석 격려

✔ 장기 유지 플랜

Tip 교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 상담 지원

- 교육활동 관련 연수 및 홍보
  - 학교·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직무 연수 등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
  - 소통·공감 캠프, 사제동행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지원단 운영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즉각적인 상담시스템 구축
  - 위기학생 상담 지원
  -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를 통한 즉각적인 상담 시스템 구축
- 직무스트레스 측정·평가 및 개입
  - 희망 교원 대상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
  - 진단 후 유형별 치유 실행
- 교사 정신건강 예방 관리 프로그램 지원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모든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갈등 해결 프로젝트(회복 프로젝트)와 같은 치유 지원 사업

다. 회복 단계별 지원* 세부 내용

1) 피해교원이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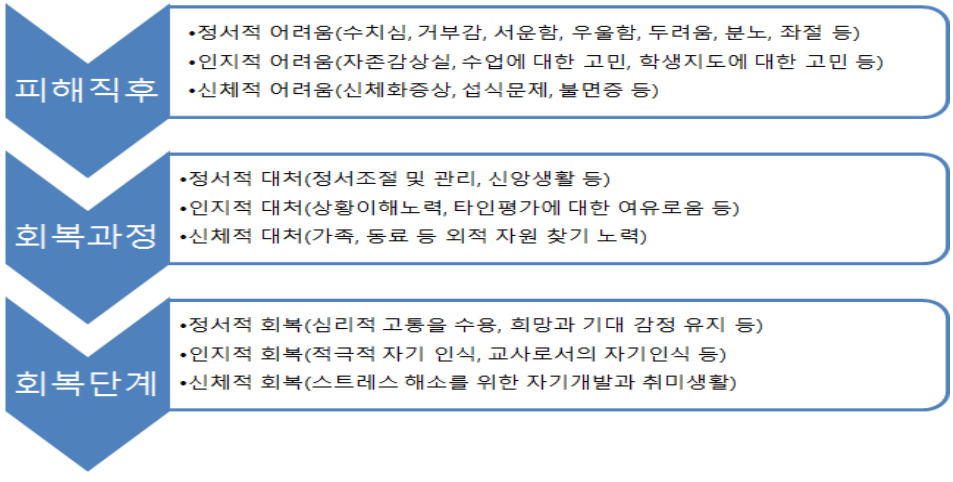

[그림 V-1] 회복 단계별 피해교원이 겪는 어려움

* 이하는 「경기도 교권침해 피해교사 치유 방안」(경기도교육연구원, 2014) 및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의한 교권침해 실태와 대처과정 연구」(박경애·조현주, 2015) 등을 주로 참고함.

(가) 피해 직후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를 대할 때의 거부감
- 교육활동 침해 이후, 스스로 나약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며 위축
- 학교의 대처에 대한 서운함, 개인적 우울감, 주위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 지금까지 교사로서 가져온 생활지도 방식과 학생,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좌절

인지적 어려움

- 자신이 무능한 교사로 남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사고
- 가해학생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과 이들에 대한 처벌로 인해 학생들이 받을 심리적 고통에 대한 걱정의 양가감정으로 혼란스러움
- 교육활동 침해 이후, 자신이 담당할 수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
- 학생지도에 대한 회피, 포기 등의 소극적 태도
- 교사의 직업이 정신적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교직에 대한 인식전환

신체적 어려움

-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임
-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며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함
-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자면서도 악몽에 시달림

(나) 회복과정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 현실상황을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여 회복하려는 시도
-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정서조절과 관리를 위한 노력

✔ 인지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 동료교사나 관리자의 평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
-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노력
-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고려
- 교사로서의 사회적 인식 자각을 위한 노력

✔ 신체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 적극적인 외적 자원을 찾는 활동
- 동료교사와 가족의 지지추구 행동
- 생활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

(다) 심리적 회복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 정서적 회복
- 부정적 정서가 남아 있음을 수용
- 심리적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
- 교직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감정을 유지

✔ 인지적 회복
- 교사로서의 자기 인식
- 자신의 적극적이고 특별한 면을 발견
- 자기성장에 대한 인식
-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 회복노력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 능력 증가

✔ 신체적 회복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자기개발활동 참여
-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으로 정신적 건강 유지

2) 치유 및 복귀 지원

[그림 V-2] 회복 단계별 지원 내용

(가) 피해 직후 단계 지원

✔ 동료교사

- 동료교사는 피해교사와 가해학생 또는 가해 학부모를 즉각적으로 격리시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피해교사를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주며 자신의 일처럼 함께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줌
- 피해교사를 가급적 혼자 내버려두지 말고 서로 모여 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논의 함

✔ 관리자

- 피해교사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
- 피해교사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상담서비스 기관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업과 업무에 대한 지원 등의 긴급지원 서비스를 가동
-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실행

✔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상담 서비스 제공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 제공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지원

(나) 회복과정 단계 지원

✔ 동료교사

-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 공감과 격려
- 피해교사가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동대처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

✔ 관리자

- 특정한 영향력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사건을 처리
- 피해교사의 회복을 위한 지지
- 정신건강 서비스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교육청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 교원상처 치유프로그램 제공
-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교권상담 법률적 지도 및 조언

(다) 심리적 회복 단계 지원

- 동료교사
  - 안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
  - 학생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
  - 관련 연수프로그램에 함께 참여

- 관리자
  - 학교 내 관계회복과 소통을 위한 노력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관련 교육실시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 교사 회복 지원 시스템 운영
  -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
  - 피해교사에 대한 지속적 법률적 상담 및 법적 대응 지원

3) 유의 사항

Do

- **교사 개인 측면**
  - 감정조절 능력 향상 노력
  - 자기개발 노력
  - 취미생활 즐기기 위한 노력
  - 소통노력, 공감을 통한 이해 등
- **외부 지원 측면**
  - 학생의 긍정반응 이끌기
  - 학부모의 응원 이끌기
  - 동료교사의 격려와 관리자의 인정
  - 교원단체의 지원 및 가족의 지지 등

Don't

- **교사 개인 측면**
  - 교사로서의 수치심이나 자존감 상실
  - 낙인에 대한 고민과 걱정
  - 가해자와의 지속적 만남
- **외부 지원 측면**
  - 동료교사의 외면
  - 관리자의 방관과 교육청의 소극적 대처
  - 형식적인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피해교사의 가중한 업무
  - 학부모와 사회의 교사불신 분위기

[그림 V-3] 회복 단계의 유의 사항

(가) 해야 할 일

✓ 교사 개인 측면

-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최면이나 명상을 활용
-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관련 서적 연구나 연수 참여 등의 노력
- 주말농장, 운동, 독서 등의 취미생활을 통한 자존감 향상
- 개인 상담과 종교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 및 회복

✓ 외부 지원 측면

-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통한 학생으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 이끌기
- 교육활동 침해 이후에 학부모의 학생지도에 관한 감사나 고마움 표현 메시지를 통한 심리적 안정
- 동료교사의 피해교사를 옹호해주는 멘트와 지속적인 대화 및 상담
- 관리자의 피해교사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지속적 멘트
- 교원단체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및 가족과 친척 등의 지지

(나) 하지 말아야 할 일

✔ 교사 개인 측면

- 피해 이후 동료교사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여기는 미안한 마음
- 자신이 침해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낙인 지을 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
- 가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지속적 만남

✔ 외부 지원 측면

- 피해교사를 업무적으로 대하거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외면하는 행동
- 관리자가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한 피해교사 회유 및 방관적 태도
- 교권보호위원회의 강제성과 구속력 없는 형식적 운영
- 피해교사에 대한 과중한 수업, 생활지도, 업무 요구
- 교육청의 형식적 업무처리와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소극적 지원
- 학부모와 사회의 교사에 대한 불신 분위기

부 록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제
4.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실제
5. 고충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6. 소청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부 록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국제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ILO/UNESCO)		교원의 지위와 권리
헌법	교육기본법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	학교의 종류, 설립, 폐지. 학생, 교직원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연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과서, 인증도서, 채택권유지
		교원자격검정령	자격증표시과목, 자격증 취득관련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공립유초중등회계규칙(시도)	학교회계의 예산편성,결산,공개,학운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의무, 징계, 휴직, 신분, 임용
		공무원복무규정	근무시간, 휴가, 겸직금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각종 수당의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초임호봉회정,호봉승급,정정,재획정경
		공무원여비규정	출장비, 이전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의 의무, 징계, 휴직, 신분, 임용
		공무원임용령	임용, 전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징계절차, 양정, 감경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 특권, 신분 보장, 소청심사, 교육활동 보호 조치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징계재심(소청)관련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교총의 교섭협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 설립과폐지, 이사회와 이사, 학교, 교원, 사립학교 재정의 기본원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 회계의 원칙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근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설립, 운영, 단체교섭 대상 범위, 재심과의 관계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 정화구역
	학교급식법	시행령	급식시설, 설비, 급식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보상, 안전공제회 관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의정의, 학내에서의 처리 등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유해시설과 매체, 유해행위 단속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단속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교육감, 교육의원, 교육청,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국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 기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시군자치구의 학교교육경비 보조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학교 앞 교통정리, 어린이 보호구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기여금, 연금, 단기급여, 장기급여, 공무상요양
	사학연금법	시행령	

가. 교원의 교육권 보장 규정

(1) 교육활동의 자주성 보장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ILO/UNESCO)

- 제61조 교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 제63조 어떠한 장학제도도 교원이 전문직으로서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격려와 도움을 주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교원의 자유와 창의성 및 책임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2) 교원의 지위 및 직무 보장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ILO/UNESCO)

- 제46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 제67조 교원은 본연의 교직임무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으로서 교원의 기본권 보장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ILO/UNESCO) 제80조

교원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4) 부당한 신분·인사 조치 보호

(가)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보호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동일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나) 소청심사 및 쟁송 제기권 보장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불체포특권 및 후임자 발령 유예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동일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벌 규정

「교육기본법」

-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형법」 상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 제2조(정의)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한 내용,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적용 가능)

「형법」상 업무방해죄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적용 가능)

다. 학생 지도 및 징계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강제전학'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판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소년법」(학교장 통고제 관련)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일반적으로 위 학교장 통고에 의한 소년의 각호 감호처분은 다음과 같다.

1호: 감호위탁(6개월+6개월)
2호: 수강명령(100시간,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1년)+상담·선도교육(3월)
5호: 장기 보호관찰(2년+1년)+상담·선도교육(3월)
6호: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월+6월)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2세 이상)

라.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의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시·도 지방경찰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8.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감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7.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의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제11조(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사.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2017.4.14. 시행, 교육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 등록부 서명 및 비밀엄수 서약서 작성(담당자 안내)

▸ 국민의례(간사)

반갑습니다.

제○회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간사「○○○」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회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엄숙함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례를 진행

▸「개회선언 및 인사말」(간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 및 인사말」(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재적위원 ○명 중 ○명 과반수가 출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말씀〉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와 가해자(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선도(고발, 조정)조치를 통한 교원의 교권보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제척자 확인」 (위원장)

위원 중 제척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피해측과 분쟁 당사자인 경우 회의에서 제척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위원장)

간사께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가 있겠습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요」안내 (간사)

목적 및 진행절차는 사안 보고 - 피해 측 확인 (사안 확인, 요구사항) 및 질의응답 - 가해측 확인 (사안확인, 가해측 입장) 및 질의응답 - 주의사항 전달

-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하고 발언권을 얻어 말씀 해주십시오.

> ☞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손을 들거나 "위원장"하고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발언이 가능하며, 발언권이 없이 행한 발언은 회의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동시에 여러 위원들이 발언을 요구했을 때에는 위원장이 우선순위를 판단해 발언허가를 한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언권 요구 및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요구로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위원장이 이에 대해 허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는 의무입니다.

참석자 소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과정은 필요에 따라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조사보고」(위원장)

간사께서 이번 교권 침해(분쟁 조정) 사건 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건 조사보고」(간사)

교권 침해(분쟁 조정)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 ○일 교권 침해(분쟁)가 발생하였으며, 사건내용은 --입니다. ○월 ○일 침해 교원 및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가해자인 김돌이 학생은 사건에 대한

진술과 함께 학부모 면담과 위클래스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답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김돌이 학생이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선도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간사께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 간사

평소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지적을 받았고, 1회 선도처분 받았습니다(--생략).

○ 관련 학생 부모 소견 청위(위원장)
사안이 예민한 경우 학부모(담임, 보호자) 소견을 듣는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 소견 청위(위원장)
소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관련 학생 학부모(담임, 보호자) 퇴장(위원장)
소견을 잘 들었으므로 관련 학생 학부모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 피해 교사 입장(위원장)

간사님께서는 피해 교사를 입장시켜 주십시오.(간사(보조교사)를 통한 대기 장소에 있는 관련 피해 교사를 입장시킨다.)

▸ 피해 교사 측 발언 및 질의응답(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께서는 피해 교사에 대하여 발언 및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교사 퇴장(위원장) --- 퇴장 후 시간을 두고 가해측 입장

▸ 가해 측 입장(위원장)

간사(보조교사)를 통한 대기 장소에 있는 가해측 입장

▸ 가해 측 발언 질의 응답(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께서는 가해 측에 대하여 발언 및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해 측 퇴장(위원장)

▸ 관련 가해·피해 측 조치 논의 및 결정(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가해측 선도·교육(고발, 조정)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피해교원(○○○)은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 상담과 병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동의).

가해학생 김돌이 학생은 피해교원에게 서면사과와 선도위원회를 통해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 5일과 부모는 특별교육 5시간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면 좋겠습니다(동의) (--생략).

〈결정〉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교원 ○○○는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 상담과 병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학생 김돌이는 피해교원에게 서면 사과하고 저희 위원회의 논의가 충분히 반영 되도록 선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의사봉 3타〉

▸ 폐회 선언(위원장)

이상으로 제○회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결과 통보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제

가. 예방교육 진행 방법

〈부표 -1〉 예방교육 진행 방법

단계	프로그램 내용	시간 (PPT)
도입	□ 교권. 교사. 스승과 관련된 속담 맞추기를 통하여 수업에 대한 흥미유발	10분 (1~8)
전개 (전반)	□ 학생인권과 교권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다. □ 교권에 대한 생각들과 현재 학교의 모습을 살펴본다. □ 역할극을 통하여 교권침해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20분 (9~20)
전개 (후반)	□ 교권침해의 상황을 가정하여 학생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 생각해본다. 나의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고통,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본다. □ 교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범죄유형, 실제 교권침해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본다.	20분 (21~33)
정리	□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10분 (34~38)

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내용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학생 대상 교육
  - 교육활동 침해의 정의 및 유형,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결과 징계 및 처벌 유형, 올바른 학교 문화 조성 방법 등 포함

- 학부모 대상 교육
  - 교육활동 침해 징후 판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교직원 대상 교육
  -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개념에 관한 교육

- 학생 인권 및 교권이라는 두 개념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즐거운 학교와 행복한 교육이 실현 가능
  -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을 함

- 교육활동 침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모두를 침해하는 결과
  -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지나치게 떠들거나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및 교사의 수업할 권리 침해 등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수업권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실현 가능
  -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외에 전문직 종사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로써 보장됨

- 학생 인권 보호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및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받을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관한 교육

- 교육활동 침해 행동으로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교원에 대한 위협, 교원에 대한 성희롱, 재물 손괴, 수업 방해, 사이버 매체 폭력, 명예훼손 등 및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 교사에 대한 사실왜곡이나 명예훼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 형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으나, 수업 진행 방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

- 선생님의 수업 내용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과 제한도 교육활동 침해
  - 예를 들어, 수업 진도 및 시험문제 난이도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요구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처벌·징계 유형에 관한 교육

-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만이 아니라 그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의무화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징계 가능
  - 단, 퇴학처분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는 불가능

-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
  -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

- 징계는 임의 처분이 아니라 학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진술권 부여
  - 퇴학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비교

〈부표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비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①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름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강제전학'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780)이 있었으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임.	

다. 예방 교육 실제 1: 교육활동 침해 상황 이해시키기

학생과 선생님의 동상이몽 (1): 성희롱

- 학생: 새로 온 선생님이 완전 내 스타일인 거예요! 요새는 연상연하가 대세라던데! 제가 고2니깐 2년 정도만 지나면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한테 고백한 거라구요! 선생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랑 사귀자~!" 했더니 선생님 얼굴도 빨개지는 게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애들도 막 우우~ 하면서 호응해 줬구요. 선생님이 좋아서 한건데 교권침해라뇨?!
- 교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입니다. 한 학생이 제 어깨에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 라고 얘기하였고 다른 학생들은 그 장면을 보고 웃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학교에 못나가겠어요….

⇨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해 개인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언행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말들로 인해 선생님은 매우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임을 이해시킨다.

학생과 선생님의 동상이몽 (2): 폭행

- 학생: 저는 선생님이 짱짱 좋아요! 다른 애들보다 제가 선생님이랑 제일 친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 관심받고 싶어서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선생님께 말 걸고 선생님을 좀 귀찮게 했어요. 선생님께서 좀 피곤해하시는 거 같긴한데…. 기분 탓이겠죠? 선생님 짱 좋아요!!!
- 교사: 한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쓰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때부터 마음에 앙심을 품고 저에게 보복행위를 하는거 같아요. 복도에서 뒤에서 크게 반말로 제 이름을 부르고, 지나가면서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이러한 괴롭힘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장난인데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네요…

⇨ 학생은 선생님에 대해 호감을 담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한 행동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임을 이해시킨다.

학생과 선생님의 동상이몽 (3): 욕설

- 학생: 밤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차피 대학엔 안 갈 거라서… 수업은 들어서 무얼 하나요. 아무튼, 너무너무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좀 잠을 잔 건 사실이예요. 하지만 제가 피해를 준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깨우길래 친구인줄 알고 "아 깨우지마 시X"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께 한 게 아니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 교사: 수업시간에 계속 잠을 자는 학생이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매 수업시간 마다 잡니다. 그 학생을 보면 자괴감이 들곤해요, 내가 교사의 자질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어느날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깨웠는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다시 엎드려 자네요. 속상합니다.

⇨ 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시간에 자고 있었고, 잠을 깨우는 선생님에게 의도치 않게 욕설을 하는 상황이다. 서로 간에 다소의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욕설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되는 사안임을 이해시킨다.

라. 예방 교육 실제 2: 교육활동 침해는 범죄 행위임을 강조

대표적인 침해 행위 유형

협박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생님에게,

- 직접 욕한다면?
- (모두 들리게) 혼잣말로 욕한다면?
- 비밀을 알아내서 놀린다면?
-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면?

⇨ 모두 '협박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죄에 해당 하는 경우

선생님에게,

- 물건을 던진다면?
- 침을 뱉는다면?
- 때리려고 위협한다면?
- 가까이서 크게 소리 친다면?
- 옷깃을 잡아 당긴다면?

⇨ 모두 '폭행죄'에 해당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생님에게,

- 음란한 카톡을 보내면?
- 질문하는 척하면서 엉덩이를 만지면?
- 치마 속을 거울로 비춰보거나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 모두 '성범죄'에 해당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처벌 사례

✔ "수업시간에 친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라구요. 중요한 얘기라서 무시했죠. 근데 계속 뭐라고 하길래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손을 들길래 때리려는 줄 알고 제가 먼저 밀쳤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 해당학생은 징계위원회 결과 퇴학처분을 받았다. 학교의 징계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만약 형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욕설을 한 것은 협박죄, 때리려고 한 것은 폭행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 "새로 온 선생님이 완전 내 스타일인 거예요! 요새는 연상연하가 대세라던데! 제가 고2니깐 2년 정도만 지나면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고백한 거라구요! 선생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랑 사귀자~!' 했더니 선생님 얼굴도 빨개지는게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애들도 막 우우우~ 하면서 호응해 줬구요. 동영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지요~!"

⇨ 해당 학생은 학교 징계로 10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학교와 시교육청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

✓ “선생님이 치마를 입고 왔길래 그냥 장난친 거예요. 누가 먼저 사진 찍는지. 만원 내기 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다고 불러서 문제 풀어주실 때 스마트 폰으로 촬영 좀 했죠. 아 근데 멍청한 친구가 찍다가 걸린 거예요! 난 안 걸렸는데!!”

⇨ 해당학생들은 징계위원회 결과 타 학교로 전학 조치되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성범죄특별법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마. 예방교육 강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예시)

〈부표 -3〉 예방교육 강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예시

차시	내 용(차시명)	시간
1	교육활동 침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1H
2	과잉체벌로 인한 파면과 징역 8월, 적당한가?	1H
3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학생, 처벌 수위는?	1H
4	대드는 학생을 체벌한 교사, 9,000여 만 원 배상?	1H
5	학생체벌 후 학생의 자살, 면책 받은 교사?	1H
6	수업 도중 학생이 뇌사에 빠졌을 때, 면책과 처벌교사의 차이는?	1H
7	수업 중 누군가 흉기 들고 난입시, 교사는 목숨 걸고 학생을 지켜야 할까?	1H
8	수영장 익사사고, 면책 받은 교사와 처벌 받은 교사의 차이는?	1H
9	수업 중 학생이 만지던 수업교구가 깨졌다면?	1H
10	자율수업 중 교구로 인해 실명한 학생, 면책 받은 교사	1H
11	클럽활동 시간에 학생끼리 놀다가 발생한 실명사고에서 교사의 책임은?	1H
12	유리창 닦던 학생이 추락사한 사고에서 교사는 면책? 형사처벌?	1H
13	학생 스스로 나르던 책상이 넘어지면서 다친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은?	1H
14	수업 중 학생이 친구를 폭행한 사건, 면책 받은 교사 vs 처벌받은 교사	1H
15	단체기합 준 후 원인제공 학생을 다른 학생이 폭행한 사건, 교사 책임은?	1H
16	쉬는 시간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식물인간, 교사는 책임이 있을까?	1H
17	조별과제 후 친구를 실명시킨 학생, 교사가 면책받은 이유는?	1H
18	안 보이는 곳에서 급우를 집단폭행한 사건, 교사 책임이 있을까?	1H
19	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학생의 부상, 교사도 책임이 있을까?	1H
20	왕따로 피해학생이 자살했을 때, 교사도 책임이 있을까?	1H
21	체벌을 빌미로 소송을 남발하는 학부모, 교사의 적절한 대응 방법은?	1H
22	학부모가 교사의 체벌을 언론에 폭로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은?	1H
23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H
24	여학생 가슴부위에 붙은 머리카락, 떼어 주면 성추행일까?	1H
25	학부모가 학생의 말만 듣고 교사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했을 때	1H
26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었을 때 학교에서 도움을 줄까?	1H
27	현장학습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 교사가 면책된 이유	1H
28	졸업 여행 중 숙소에서 발생한 학생 실명사고, 교사가 면책된 이유는?	1H
29	버스가 급정거해 넘어진 학생, 교사도 책임이 있을까?	1H
30	학교에 개가 나타나 학생을 문 사건, 교사가 책임져야 하나?	1H
총시간		30H

4.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실제

가. 생활협약 제정 절차

1단계
- ▪ 생활협약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수집
- ▪ 시행 학교 사례 검토

2단계
- ▪ 학교교육계획 반영
- ▪ 생활협약추진위원회 구성
  - – 교사대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선정
  - – 워크숍 등을 통해 생활협약 추진 일정 확인

3단계
- ▪ 학교공동체 공감대 형성
- ▪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생활협약 교육 실시
  - – 학생대표단 구성 및 생활협약 실천 동의
  - – 학부모대표단 구성 및 생활협약 협조 요청

4단계
- ▪ 학생 생활협약 의견 조사
  - – 학급별 생활협약 마련 자치활동 진행
  - – 학년별 생활협약 약속 만들기
  - – 전체학년 생활협약 약속 만들기

5단계
- ▪ 학부모 생활협약 의견 조사
  - – 생활협약 의견조사 가정통신문 발송 및 회수
  - – 학부모 위크숍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 학부모 생활협약 약속 만들기

6단계
- ▪ 교사 생활협약 의견 조사
  - – 생활협약 설문 조사 실시
  - – 교사 위크숍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 교사 생활협약 약속 만들기

7단계
- ▪ 생활협약 공청회 개최
  - – 학생, 학부모, 교사 생활협약(안)에 대한 공개 토론
  - – 각 주체 대표단을 선정하여 상호 교차 토론 진행
- ▪ 생활협약(안) 수정을 위한 의견 수렴

8단계
- ▪ 학교공동체 생활협약안 조인식
  - – 학생, 학부모, 교사 생활협약안 선포
  - – 각 주체 대표의 이행 선서
- ▪ 학교공동체 생활협약안 서명
  - – 학생 및 교사 개인별 서명
  - – 학부모에게 생활협약안 발송 및 서명지 회수

9단계
- ▪ 추수 활동 및 평가
  - – 실천 상황 중간 점검 및 토론
  - – 평가 결과 반영하여 다음해 학교계획에 반영

[부그림 -1] 생활협약 제정 절차

나. 생활협약 의견 수렴 방법

(1) 학부모 의견 수렴

OO학년도 OO학교 생활협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 생활협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협약이란,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간추려 협약 형태로 정한 약속입니다. 학교 생활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규칙을 지키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지향하여야 할 공동선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협약에 관한 아래 실천 계획을 살펴보신 후 의견을 작성하시어 O월 O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생활협약 제정 계획』

학교 생활협약 초안 마련	학생, 학부모, 교사 생활협약안 마련	- 생활협약 안내 - 안내장 및 설문지를 통한 공동체 의견 수렴
최종안 마련	생활협약 최종안	- 초안을 바탕으로 시안 마련
생활협약 공포·시행	공포 및 준수 서약	- 생활협약 공포 및 준수 서약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적용 및 환류	- 학교 구성원들의 생활협약 준수
		- 체크리스트 등 실천 도모

----------절----------취----------선----------

(　　)학년　(　　)반 학생이름 : (　　)

◎ **학부모 생활협약**으로 적절한 내용을 적어 주세요.

(자녀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사항, 다른 학교 구성원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예: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아침밥을 꼭 먹이겠습니다, 등)	

◎ **학부모 생활협약 명칭**으로 적절한 의견을 적어 주세요.

(예: 학부모의 약속, 함께하는 생활협약 등)	

0000. 00. 00.

O O 학 교 장

(2) 학생 의견 수렴

학생 생활협약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

1. 다음 중 학생 생활협약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항목별로 1~2개만 골라 체크해주십시오(학칙에 정해진 사항 중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학칙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율적 약속 성격의 내용 등).

가. 친구 관계

□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 친구에게 욕설을 사용하지 않으며,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외모나 말투, 학교 성적 등의 이유로 친구들을 따돌리지 않는다.

나. 학습 태도

□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을 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다.

□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겠다.

다. 교내 생활

□ 서로 인사하며 배려하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겠다.

□ 교내에서는 우측으로 조용히 걸어 다닌다.

□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는 아침에 학교에 오면 전원은 꺼 두겠다.

□ 게임기 등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겠다.

□ 공동 소유물과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다룬다.

□ 교실, 복도 등에 껌,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없이 항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 급식 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한다.

라. 가정 생활
□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리정돈과 청소를 자율적으로 한다.
□ 컴퓨터 및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줄이고, 게임을 자제한다.
□ 외출 시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다.

2. 기타 학생 생활협약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십시오.

(예: 인사 잘하기, 복도에서 뛰지 않기 등)	

3. 학생 생활협약 명칭으로 적절한 의견을 적어 주세요.

(예: 나와의 약속, 함께하는 생활협약 등)	

(3) 교사 의견 수렴

교사 생활협약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

1. 다음 중 교사 생활협약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항목별로 1~2개만 골라 체크해주십시오.(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 사항,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내용)

가. 학생에게

□ 체벌을 하지 않는다.
□ 학생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
□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혼낼 때는 단호하고 따끔하게 한다.
□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해 준다.
□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노력하여 폭력 없는 학급을 만든다.
□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칭찬한다.
□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이나 공동생활을 침해할 때 단호하게 대처한다.
□ 학생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대일 상담을 많이 한다.
□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 원인행위가 없을 경우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나. 학부모님과

□ 학부모와 항상 거리낌 없는 대화와 상담을 한다.
□ 학부모는 교육의 동반자로 학부모회의 의사는 물론, 학부모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다. 교사들끼리

□ 항상 밝게 웃으며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 학교의 구성원이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 원리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 의사결정시 학생 및 학교의 교육 가치를 우선한다.

□ 우리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르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준다.

2. 기타 교사 생활협약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십시오.

3. 교사 생활협약 명칭으로 적절한 의견을 적어 주세요.

(예: 우리의 약속, 함께하는 생활협약 등)	

다. 생활협약 점검 방법

☺ 학교생활협약과 관련하여 한 달 동안 실천한 내용에 대해 가족과 함께 점검해 보세요.

학교생활협약 체크리스트(0월)

학교생활협약 체크리스트(학생, 학부모)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학생들의 생활협약	- 복도에서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 급식소에서 떠들지 않겠습니다.				
	- 수업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겠습니다.				
	- 책을 읽은 후 제자리에 놓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생활협약	- 감정적으로 버럭하지 않겠습니다.				
	- 하루에 30분 이상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녀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훈계보다는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 학교생활협약에 대한 의견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 학교생활협약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실천한 내용에 대해 점검해 보세요.

학교생활협약 체크리스트(0월)

학교생활협약 체크리스트(교사)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교사들의 생활협약	- 매일 눈을 마주치며 학생들과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겠습니다.				
	- 학생의 말을 믿어주고 의견을 존중해 주겠습니다.				
	-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 학교생활협약에 대한 의견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 생활협약(예시)

OO중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1 학생 자율 약속

학생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자율약속	
1. 수업 매너	- 수업시간에 졸거나 잠자지 않겠다(졸리면 선생님의 허락을 얻은 후 잠깐 쉰다)
	- 수업시간에 군것질을 하거나 잡담을 하지 않고, 서로 참여-협력하며 경청하겠다.
	- 자리를 바꾸거나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 종치면 곧 바로 자리에 앉아 수업준비를 하겠다.
2. 두발	- 두발은 자율화하되, 염색은 자제(튀지 않는 색깔)하도록 하고, 퍼머(웨이브)는 금지한다.
3. 언어예절	- 학우들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며, 고운 말(다가가는 대화)을 사용한다.
	- 선생님들께 예의바른 용어를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말대꾸하지 않는다.
4. 복장 등	- 지정된 교복, 또는 생활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등교 이후 추울 때는 상의위에 패딩, 점퍼 등을 걸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생활복, 간편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나친 화장, 액세서리는 자제하도록 한다.
5. 휴대폰 없이지내기	-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등교 후 아침 조회시간에 제출하고, 종례 후 돌려 받도록 한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시 일주일간 별도 보관)
6. 청결, 실내화	- 교실, 복도 등에 쓰레기, 침, 껌 등을 버리지 않고,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한다.
	- 건강과 안전, 청결한 교실환경을 위해 실내화를 신도록 한다. (삼선슬리퍼 금지)
7. 안전한 학교생활	- 복도나 계단에서 뛰지 않으며, 학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책상, 의자를 포함한 학교 물품을 함부로 다루거나 파손하지 않는다.
8. 평화로운 학교생활	-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협박 등 모든 폭력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 (폭력 stop !활동을 전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토론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따뜻하고 우정이 넘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

2 교사 자율 약속

교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자율약속	
1. 학생들과 공감 소통하기	- 학생들의 말을 믿고 존중하며 눈높이를 맞추어 끝까지 경청하기
	- 학생들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한 후, 차분하게 설득하기
	- 아이들의 기질이 다양하고 생각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역지사지 하기
	-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버럭하지 않기, 욕설이나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기, 차별하거나 비교하지 않기'
	-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학생들을 맞이하기
2.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업 만들기	-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협력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행복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쉽고 재미있게 가르친다.
	- 교사들도 서로 참여-협력하면서 함께 성찰하는 수업 연구를 통해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촉발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3. 함께 참여-협력하는 생활교육 (교사, 학생, 학부모)	-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 칭찬을 많이 하고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으로 이해해 준다.
	- 학생 생활교육은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 약속이행을 점검한다.
	-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체벌하지 않는다.
	- 자율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 우선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 이후 상담 및 학년별 성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간다.

3 학부모 자율 약속

학부모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자율약속	
1. 자녀와 공감, 소통하기	- 하루에 5분씩 손잡고 대화하기, 등하교시 안아주기, 하루 세 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하기
	- 아이들이 말할 때, 눈높이를 맞추어 끝까지 경청하기
	- 아이들과 대화할 때, 부모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버럭하지 않기, 욕설이나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기, 잔소리 줄이기'
	- 먼저 아이들의 감정과 기분을 존중하고, 공감 표현하기,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득하기
	- 꽃으로도 때리지 않기
2. 올바른 생활 습관 만들기	- 좋은 생활습관(인사예절, 건강, 독서, 게임, 휴대폰 등)을 갖도록 함께 실천하겠다.
	- 아침밥을 꼭 먹이겠다.
	- 잠을 충분히 자도록 배려하겠다.
	- 학교생활과 친구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주 대화하겠다.
	- 자녀들이 외출할 때는 어른들의 허락을 받도록 하겠다.
3. 자녀교육 함께 참여하기	- 좋은 취미생활을 갖도록 함께 참여하겠다.
	- 한달에 한번 이상은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거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 자녀들의 꿈, 진학, 장래희망 등에 대해 자녀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존중하고 배려하겠다.
	- 자녀의 생활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약속을 하고 꼭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

4 OO중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강제규정)

공동체규칙	징계 수준 (세부방안은 의견수렴 내용 참조)
■ 폭력 ■ 성폭력 ■ 절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름 - 1단계 : 삼자협약 위원회 - 학부모-학생-교사 협약체결 (동반 상담, 성찰계획 제출) - 2단계 : 성찰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프로그램 이수 - 3단계 : 등교 정지 등 ▸절도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해당 물품 변상 포함
■ 흡연	▸3회 이상 흡연 시 등교정지 ~ (1년간 누적) - 1회 : 삼자협약 - 2회 : 성찰 프로그램, 대안교육 이수 - 3회 : 등교정지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수업방해 행위	▸1회 : 삼자협약 (단, 해당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중재, 조정, 화해 노력을 우선함.) ▸2회 : 성찰 프로그램, 대안교육 이수 ▸3회 : 등교정지 ~
■ 부정행위	▸해당고사는 0점 처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내봉사 ~ 등교정지
■ 무단출결	▸3회 무단지각, 결과, 조퇴는 무단결석 1회로 처리함 ▸1차, 2차, 3차 4차(무단결석 7회 마다 경고 통지서 발송) 삼자협약, 대안교육 이수, 등교정지 ~

* 생활협약은 '자율약속'과 '강제규정'으로 구분. 강제규정은 폭력·성폭력, 절도, 흡연, 교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 및 수업방해, 부정행위, 무단출결 등 7가지 영역만 포함. 그러나 두발, 복장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자율약속에 포함되며, 별도의 벌칙·벌점 부과 없음.

라. 생활협약 운영 방법 예시

제3장 학생생활규정(OO고등학교)

제1절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규정

(아래의 내용은 예를 통해 제시한 내용으로 학년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66조(명칭) 본 규정은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규정』이라 칭한다

제67조(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고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사안 예방 및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학생들의 기본 생활예절과 학교규칙을 스스로 잘 지킴으로써 자아통제력과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제68조(운영원칙) 학생 인권· 친화적·회복적 단계별 생활교육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2.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3.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지도를 실시한다.
4. 교육적인 지도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제69조(운영방법)

1. 3단계 인권·친화적·회복적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제
   - 1단계: 약속 단계(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실천 약속)
   ※ 담임 및 교과 교사의 지도 및 OO고 공동체 생활협약 작성
   - 2단계: 약속 준수 단계(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자치활동 활성화)
   ※ 학년부장 및 학년부 생활지도계 교사의 생활교육 프로그램 진행
   - 3단계: 선도단계(교육적 선도 조치)
   ※ 선도위원회 선도 조치에 따라 교육 실시

2. 학교생활 협약의 항목에 따라 월별 누계를 내어 횟수에 따라 단계적 조처를 한다.
   - 약속 단계 : 월말 횟수가 10회 ~ 15회인 경우
   - 약속 준수 단계 : 월말 횟수가 16회 ~ 20회인 경우
   - 선도단계(교육적 선도 조치)월말 횟수가 21회 이상 경우
3. 각 단계별로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은 지도교사의 재량에 따라 누적 횟수를 감할 수 있다.
   - 약속 단계에서는 5회 감소
   - 약속 준수 단계는 8회 감소
   - 선도단계는 11회 감소
4. 생활인권부 주관 교내 행동발달관련 수상자로 추천되는 학생은 추천일 기준 생활협약 지적사항 누계가 5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인권존중 - 학생 의사에 반하는 지도방법 지양 (지나친 용의 복장 규제 등)
6. 상호존중-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제70조(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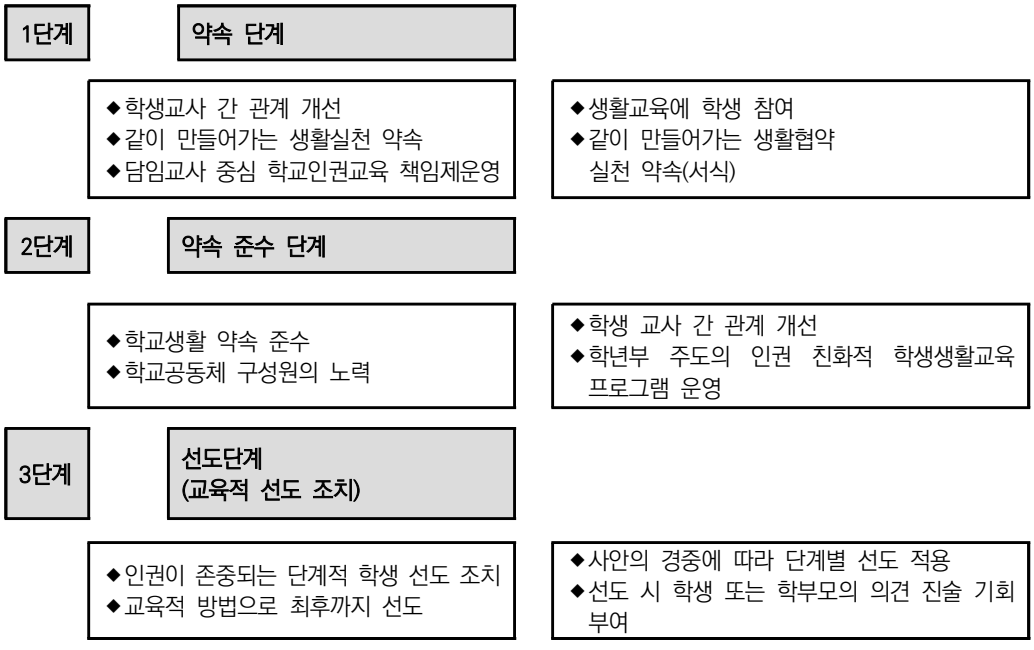

[부그림 -2] 생활협약 운영 절차

제71조(학교생활협약)

1. 학생으로서 적절한 행동
   - 전교사는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견하면 별도 기록지(SAB)에 누가 기록 한다.
   - 학년말에 누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10회 이상 기록된 경우 모범상 대상자로 추천한다.

〈부표 -4〉 학생으로서 해야 할 행동

연번	학생으로서 해야 할 행동
1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2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3	학급 비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4	급식 질서 지키기
5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6	교실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학생
7	청소활동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8	각종 습득물 신고하기(객관성이 확실한 경우만 인정)
9	예절이 바른 학생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10	담임 및 교과교사의 판단에 의해 학급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
11	학급 회의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기
12	휴대폰 제출
13	학교 및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14	학교의 중요한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훼손 등을 신고
15	학교폭력 및 학생사안 발생 신고
16	외부인의 교실 무단출입 신고
17	흡연 또는 음주행위 신고
18	SNS 페이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학생(선플 달기 등)
19	학교장 주최행사 및 타 기관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학교 명예를 드높인 학생
20	학교 추천 이외의 대외상 (시, 도 단위 이상 기관장 상) 수상
21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선행, 모범이 보도된 학생
22	기타 - 위 항목에는 없으나 학생들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되는 행동

2.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전교사는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을 발견하면 (SAB)에 누가기록 한다.
- 매월 1회 누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표 -5〉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연번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1	두발 또는 용의규정 위반(화장, 파마, 염색, 귀걸이, 피어싱, 색이 있는 매니큐어 등)
2	복장규정 위반(명찰, 타이, 치마/바지 줄여 입기, 실내 사복착용, 써클렌즈 착용 등)
3	수업태도 불량(엎드려 잠자기, 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등)
4	수업시간에 전자기기(PMP, 핸드폰 등) 무단사용
5	수업시간에 음식물 취식 금지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 무단결과
7	인사 및 기본예절 부족
8	실내에서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9	실내에서 괴성, 공놀이 등 소란 행위
10	교내에서 껌, 쓰레기, 침 등을 함부로 뱉거나 버림
11	급우 또는 선, 후배에게 심한 욕설
12	화장실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13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14	고의 및 과실로 학교기물(도서, 게시물, 비품 포함) 파손 및 훼손
15	책상 및 화장실 등에서 낙서 및 훼손 행위
16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에 저해되는 행동(조, 종례시간 무단이탈 등)
17	교사 또는 어른들의 지시불이행 및 불손한 언행
18	무면허 운전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거나 폭주하는 행위
19	단체활동 및 교내·외 행사에 무단불참
20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21	음란물의 반입, 탐독 및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시청
22	학교 허락 없이 티켓 제작, 판매, 알선 및 행사 참석
23	선도수준이하의 신체적 다툼
24	SNS 및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25	기타 - 위 항목에는 없으나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72조(인권·친화적·회복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부표 -6〉 인권 · 친화적 ·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

영역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성찰 중심 활동	1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회복적 반성문 쓰기,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작성하기, 마음일기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
	2	잠시 마음 다스리기(STAR)	분노에 쌓였을 때 멈추고, 생각하기.
	3	침묵수행하기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행동 돌아보기
	4	교사와 함께 대화하기	교사와 함께 대화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 유도
과제 중심 활동	5	자기주도 학습하기	자기 성찰교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
	6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학교 교칙에 기록 된 내용을 읽어 보기
	7	학교공동체 생활협약 읽어보기	생활협약 정독 후 협약을 지키지 않은 부분 작성
	8	생활약속 써 보기	자신만의 생활약속 작성
참여 중심 활동	9	교육활동 도우미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10	캠페인 활동 도우미	캠페인 활동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11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	지역사회 활동, 복지시설과 연계한 나눔과 참여
	12	부모일터 체험하기	부모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의 대화, 부모 일터 체험 후 느낀 점 쓰기
		녹색청소년	아침 등교하여 교문 앞 등교지도 참여
상담 중심 활동	13	사제동행하기	몸으로 함께하기, 마음으로 함께하기, 여럿이 함께하기
	14	상담프로그램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감) 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15	음악 치료 프로그램	심신치료 음악듣기 프로그램
규정 약속	17	학생자치법정	학생 자치법정의 조직, 운영

제2절 학생자치법정 규정

제73조(명칭) 본 규정은『학생자치법정 규정』이라 칭한다.

제74조(운영방침)

1. 목적
   ①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②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한다.
   ③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 한다.
2. 방침
   ① 학생자치법정은 학년부 회복적 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학생자치법정의 판결은 최대한 긍정적인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사의 임의적 처벌 및 학생의 소명기회 부족 등 생활 지도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 자치 능력 향상 및 교육적인 방법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정을 운영한다.
   ④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는 생활태도를 습관화하게 한다.
3. 세부계획
   ① 회부 대상 : 학년에서 회부한 학생 및 학급담임교사가 요청한 학생
   ②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및 역할

〈부표 -7〉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

구 분	구성원의 역할
판 사	학생회장이 담당하며,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 사	회부 대상자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형하는 일을 한다.
변호사	회부 대상자가 원하는 학생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회부 대상자의 변론을 담당한다. 필요시 학생회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원하여 필요한 학생들에게 변론을 담당할 수 있다.
배심원	학생 및 교사의 추천 학생 중 10명 이내로 선정한다.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회의실에서 회부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도를 내릴지 긍정적 지도의 유형을 참고하여 지도 수준을 결정한다.
서 기	법정에서의 발언들을 기록하고 증인 선서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법정 질서 담당관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③ 운영 횟수 및 일시 : 학생자치법정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분기 1회(연간 4회)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매년 1분기는 학생자치법정 시범식 교육으로 운영하고, 2,3,4분기는 본교 〈학생자치회 자치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월별 운영 계획

〈부표 -8〉 학생자치법정 월별 운영 계획

시 기	주요 추진 사항
2월 중	· 법무부에 학생자치법정운영 신청
4월	· 교사와 학생의 의견 수렴 ·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홍보(학부모, 학생, 교사) ·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선발 · 법무부 주관 학생자치법정 연수 참가 ·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관한 학생 연수 · 학생자치법정 홍보를 위한 전교생 교육
분기별 1회	· 넷째 주 금요일 학생자치법정 개최 · 본교 학생자치회 자치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함.
해당연도 12월 중	· 사후 평가회의 및 개선 방안 모색 · 향후 학생자치법정 운영 계획 수립

⑤ 긍정적 지도의 유형

〈부표 -9〉 학생자치법정 긍정적 지도의 유형

긍정적 처벌의 종류	비고
배심원(방청객)으로 차기 법정에 참여	1일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기 〈또래조정, 상담〉	1회기~10회기
• 아침 일찍 등교하여 청소 봉사활동하기(08:20~08:40) • 일찍 등교하여 플랜카드 들고 캠페인하기(08:40~08:40) • 학교 홈페이지에 나의 다짐쓰기(1,000자 이상) •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과 지각생 선도하기	3일
• 수업시간 열공 확인 받기(하루 4시간 이상) • 학교 홈페이지에 나의 다짐쓰기(1,000자 이상) • 도서실 추천 도서 독후감 쓰기(A4 2장 이상) • 사자성어 쓰고 뜻 써오기(하루 50개) • 청소년 권장 한자와 천자문 쓰기 • 자기반성 UCC만들기 •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자신의 생각 적기 • 교장선생님과 면담 후 자신의 생각 적기	5일 ~ 10일

5. 고충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 결정시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정서 송달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기관의 장(교육감)에 통보 → 기관의 장(교육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보냄(결정서)

↓

불복 시 재심 청구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재심 청구서를 제출

↓

고충심사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에 대한 재심사건을 심의

↓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부그림 -3] 고충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단,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고충심사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신에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방법을 상담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

Q&A

Q 사립학교 교원도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 중앙고충심사청구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 교육공무원(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은 제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은 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중앙고충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중앙고충심사청구는 중앙고충심사청구서(보통고충심사를 거쳤을 경우 보통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를 교육부장관(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게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를 반드시 거친 뒤에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이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때는 보통고충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불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부 받은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강한 권고의 성격을 갖으나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소청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본인) – 징계처리 절차 등의 적절성 확인 –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
⇩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 청구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이 즉시 담당조사관을 지정
⇩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 피 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7일 이내)
⇩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20일)
⇩	
증거 제출 및 사실 조사 등	▪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의 추가 증거 제출, 증인 신청 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사실 조사, 검정 · 감정 의뢰 등
⇩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 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	
심사 및 결정	▪ 결정 : 취소, 변경, 무효 확인, 기각, 각하 등 ▪ 2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결정서 송부	▪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결정 후 15일 이내)

[부그림 -4] 소청심사위원회 처리 절차

Q&A

Q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A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 학교의 '교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 및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그리고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교,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본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교원 소청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A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례로 2016.06.16. 처분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2016.07.16.까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휴무토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므로 2016.07.16.(토)을 넘겨 2016.7.18.(월)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기간 경과로 역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교원 소청심사 청구는 어떻게(제출서류, 제출방법 등) 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t.go.kr) 에서 청구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210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담실 전화번호 : 044-203-7402

Q 교원 소청심사 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까?

A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교원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A 청구와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Q 교원 소청심사 취하는 어떻게 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취하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FAX, 우편, 인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하"란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청구를 철회하여 청구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취하서가 위원회에 도달되면 청구인의 취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된 것이므로 이후에는 청구인도 임의로 다시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해 다시 다투고 싶다면 소청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청제기기간(30일)이 도과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취하서 제출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경고·주의도 교원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 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②청구인 적격 여부 ③처분성 존재 여부 ④청구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교원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인 경우 원 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 소청심사청구대상보다 더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A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에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는 청구인이 받은 원 처분과 같거나 유리한 결정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원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정은 받지 않습니다.

Q 교원 소청심사 청구를 한 교원의 후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까?

A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 해임 ·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 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Q 피청구인이 소청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권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소청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행의 지연과 관련하여 감독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결정의 불이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형사적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소청결정의 효력은 무엇이며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A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각 결정의 성격과 효력은 다음과 같으며 결정의 효력은 결정서가 도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1. 각하결정은 청구기간경과 등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청구취지의 당부)을 살피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이다.
2. 기각결정은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 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이다.
3. 취소 또는 변경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직접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이다.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은 위원회가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결정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하게 된다.
4. 확인결정은 본안을 살펴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의 무효, 부존재, 실효 등을 확인하여 주는 결정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무효화 시켜주는 결정이 아니라 무효인 처분의 효력이 무효임을 공권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결정이다. 확인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결정에 상반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결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5. 이행명령결정은 본안을 살펴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취지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으로서 취소결정은 거부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되는 것이고, 의무이행명령결정은 기한일 까지 적극적으로 청구취지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진 ♣

기관	이름	직급
교 육 부	채홍준	교원정책과 과장
	윤지효	교원정책과 사무관
동 국 대 학 교	박종배	동국대학교 연구책임자
	안홍선	동국대학교 공동연구자
	박윤송	동국대학교 연구보조원
한국교육개발원	김순남	교원치유지원총괄센터장
	김남항	교원치유지원총괄센터 연구원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발행일 | 2017년 5월
발행인 | 김재춘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전 화 | 02-2260-3897
팩 스 | 02-2290-1337
인 쇄 | 디자인 범신 042-254-8737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교원정책종합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Teacher Policy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